

제367회국회  
(임시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9년3월13일(수)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 식품·의약품등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
8.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업무보고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 다. 국민연금공단
  - 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상정된 안건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김경진·원유철·추경호·김성찬·정태욱·박덕흠·임이자·김정훈·조훈현 의원 발의) ..... 4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김정우 · 강훈식 · 송갑석 · 이규희 · 이후삼 · 윤소하 · 박정 · 윤관석 · 우원식 · 인재근 의원 발의) .....	4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 · 박인숙 · 정우택 · 성일중 · 원유철 · 박덕흠 · 홍문표 · 임이자 · 윤영석 · 이종명 의원 발의) .....	4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윤후덕 · 금태섭 · 백혜련 · 김병기 · 맹성규 · 박홍근 · 신창현 · 정춘숙 · 윤일규 의원 발의) .....	4
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 · 김성원 · 임이자 · 김무성 · 박덕흠 · 주호영 · 박인숙 · 박명재 · 김광림 · 이명수 의원 발의) .....	4
7. 식품·의약품등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 · 이종명 · 조훈현 · 김성찬 · 박덕흠 · 엄용수 · 김명연 · 김상훈 · 김용태 · 이은권 의원 발의) .....	4
8.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이상헌 · 정인화 · 최인호 · 송옥주 · 이동섭 · 강길부 · 정세균 · 서형수 · 김병기 · 윤영일 · 안민석 의원 발의) .....	4
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 · 심재철 · 이완영 · 민경욱 · 이현재 · 홍문표 · 이종명 · 주호영 · 이채익 · 성일중 의원 발의) .....	4
1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	4
1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 · 윤재옥 · 이종배 · 김승희 · 김규환 · 최연혜 · 윤종필 · 이현재 · 권성동 · 김세연 의원 발의) .....	4
1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 · 김종희 · 김세연 · 김경진 · 박찬대 · 김석기 · 정춘숙 · 유성엽 · 김순례 · 윤소하 의원 발의) .....	4
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성일중 · 김재원 · 박덕흠 · 윤일규 · 김성찬 · 박성중 · 김성원 · 김명연 · 유민봉 · 윤종필 의원 발의) .....	4
1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 · 송기현 · 정춘숙 · 천정배 · 권칠승 · 이종걸 · 오제세 · 이찬열 · 남인순 · 윤일규 의원 발의) .....	4
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	4
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 · 황희 · 이춘석 · 최인호 · 이재정 · 서영교 · 김민기 · 김경협 · 박광온 · 송갑석 의원 발의) .....	4
1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 · 김상훈 · 이종명 · 이완영 · 송석준 · 문진국 · 김기선 · 김도읍 · 이학재 · 홍문표 의원 발의) .....	4
1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 · 김상훈 · 곽상도 · 윤영석 · 윤종필 · 조훈현 · 김성찬 · 박덕흠 · 임이자 · 이은권 · 곽대훈 의원 발의) .....	4
1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	4
2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 · 황희 · 이춘석 · 최인호 · 이재정 · 서영교 · 김민기 · 김경협 · 박광온 · 송갑석 의원 발의) .....	4
2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 · 소병훈 · 김현권 · 서영교 · 오영훈 · 민홍철 · 윤일규 · 이동섭 · 박찬대 · 이철희 의원 발의) .....	4
2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 · 손혜원 · 임종성 · 최재성 · 우원식 · 신창현 · 김종민 · 김철민 · 제윤경 · 최인호 · 김영호 · 노웅래 · 심기준 · 서삼석 · 이용득 · 심재권 · 김상희 · 기동민 의원 발의) .....	4
2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	5
24. 업무보고 .....	5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 다. 국민연금공단
- 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이명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 8일 자로 더불어민주당의 신동근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시고 무소속의 손혜원 위원님이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손 위원님,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고, 바로 인사 말씀 가능하시겠습니까?

○손혜원 위원 예.

○위원장 이명수 해 주십시오.

○손혜원 위원 생소한 부서에 와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열심히 가르쳐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새로 근무하게 된 전문위원과 직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지민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한길수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은 조성훈 입법조사관입니다.

오승희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위원회 활동을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 3월 9일 자로 새로 임명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의경 처장님, 우리 위원회와 함께 일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인사말씀은 바로 업무보고가 있으니 그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

님들과 업무보고 준비에 애써 주신 정부 관계기관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위원회에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의 입장에서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임시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최근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적 재난이 국민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위협을 해 오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적 방안이 보다 심도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초고령사회로의 전환기를 맞아서 국민들이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노후의 삶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제고가 바로 위원회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와 방향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고려와 논의가 계속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맞아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네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금년도의 여러 가지 계획을 점검해 보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다 세심하고 배려 깊게 정책이 집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고연과 사려 깊은 사건들을 함께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안 상정과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회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먼저 법률안 상정 절차를 거친 후에 각 기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일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국장과 연금정책국장이 함께 배석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보시는 것처럼

언론의 관심과 함께 특히 국회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 · 김경진 · 원유철 · 추경호 · 김성찬 · 정태욱 · 박덕흠 · 임이자 · 김정훈 · 조훈현 의원 발의)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 · 김정우 · 강훈식 · 송갑석 · 이규희 · 이후삼 · 윤소하 · 박정 · 윤관석 · 우원식 · 인재근 의원 발의)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 · 박인숙 · 정우택 · 성일중 · 원유철 · 박덕흠 · 홍문표 · 임이자 · 윤영석 · 이종명 의원 발의)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 · 윤후덕 · 금태섭 · 백혜련 · 김병기 · 맹성규 · 박홍근 · 신창현 · 정춘숙 · 윤일규 의원 발의)
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 · 김성원 · 임이자 · 김무성 · 박덕흠 · 주호영 · 박인숙 · 박명재 · 김광립 · 이명수 의원 발의)
7. **식품·의약품등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 · 이종명 · 조훈현 · 김성찬 · 박덕흠 · 엄용수 · 김명연 · 김상훈 · 김용태 · 이은권 의원 발의)
8.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이상현 · 정인화 · 최인호 · 송옥주 · 이동섭 · 강길부 · 정세균 · 서형수 · 김병기 · 윤영일 · 안민석 의원 발의)
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 · 심재철 · 이완영 · 민경욱 · 이현재 · 홍문표 · 이종명 · 주호영 · 이채익 · 성일중 의원 발의)
1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1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 · 윤재옥 · 이종배 · 김승희 · 김규환 · 최연혜 · 윤종필 · 이현재 · 권성

- 동 · 김세연 의원 발의)
1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 · 김종희 · 김세연 · 김경진 · 박찬대 · 김석기 · 정춘숙 · 유성엽 · 김순례 · 윤소하 의원 발의)
  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 · 성일중 · 김재원 · 박덕흠 · 윤일규 · 김성찬 · 박성중 · 김성원 · 김명연 · 유민봉 · 윤종필 의원 발의)
  1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 · 송기현 · 정춘숙 · 천정배 · 권칠승 · 이종걸 · 오제세 · 이찬열 · 남인순 · 윤일규 의원 발의)
  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 · 황희 · 이춘석 · 최인호 · 이재정 · 서영교 · 김민기 · 김경협 · 박광온 · 송갑석 의원 발의)
  1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 · 김상훈 · 이종명 · 이완영 · 송석준 · 문진국 · 김기선 · 김도읍 · 이학재 · 홍문표 의원 발의)
  1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 · 김상훈 · 광상도 · 윤영석 · 윤종필 · 조훈현 · 김성찬 · 박덕흠 · 임이자 · 이은권 · 광대훈 의원 발의)
  1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언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2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 · 황희 · 이춘석 · 최인호 · 이재정 · 서영교 · 김민기 · 김경협 · 박광온 · 송갑석 의원 발의)
  2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 · 소병훈 · 김현권 · 서영교 · 오영훈 · 민홍철 · 윤일규 · 이동섭 · 박찬대 · 이철희 의원 발의)
  2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 · 손혜원 · 임종성 · 최재성 · 우원식 · 신창현 · 김종민 · 김철민 · 제윤경 · 최인호 · 김영호 · 노웅래 · 심

기준·서삼석·이용득·심재권·김상희·기동민 의원 발의)

**2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14시08분)

○**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부임한 이의경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심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1월에 정부가 제출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수시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식품판매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영업신고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기능식품 조사·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복적인 행정 절차를 개선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 활성화와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이의경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사전 협의할 때 나머지 법안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제안설명에 대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검토보고를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검토보고 역시 이번에는 법안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 관계상 서면으로 하도록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위원님들 중에 특별히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앞으로 후속 보고나 여러 가지 심의에서 보다 세밀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23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2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24. 업무보고**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다. 국민연금공단

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4시11분)

○**위원장 이명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법안 제안설명해 주신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한 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셨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식약처 주요 업무계획 전반을 소개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식약처 모든 직원들은 업무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새로이 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듯 최근 식품·의약품 안전을 둘러싼 정책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폭염 등 이상기후와 미세먼지, 생활방사선 등 새로운 건강 위협 요소의 등장으로 먹거리 안전은 물론 각종 생활필수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1인가구의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식품·의약품에 대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가 필요한 분야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대수명의 증가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융·복합 치료 제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 혁신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처는 ‘안전한 식품·의약품, 건강한 국민’ 이것을 목표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의 기본은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국민과의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불합리한 제도는 원점에서 검토하여 개선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의 건강과 식품·의약품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 처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우리 처가 추진하고자 하는 보다 상세한 정책과제는 업무보고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먼저 최성락 의약품안전처 차장입니다.
- 이동희 기획조정관입니다.
- 김성곤 소비자위해예방국장직무대리입니다.
- 한상배 식품안전정책국장입니다.
- 이승용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입니다.
- 권오상 식품소비안전국장입니다.
-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입니다.
- 강석연 바이오생약국장입니다.
- 양진영 의료기기안전국장입니다.
- 이윤동 식품기준기획관입니다.
- 서경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직무대리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는 정책 추진 여건 및 방향, 두 번째 주요 업무 추진계획, 세 번째 주요 현안사항, 네 번째 참고자료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정책 추진 환경과 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7쪽으로 가겠습니다.  
7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먹거리 안전의 기본을 탄탄하게 다지겠습니다.  
식품안전사고부터 근본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식품안전인증제도(HACCP)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HACCP 인증업체가 인증받은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사전 통보 없이 전면 불시 점검하겠습니다. 식품안전에 직결되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즉시 인증을 취소하는 등 불성실한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점검기록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HACCP 관리방식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급식에서 자주 제공되거나 식중독이 쉽게 발생하는 식품을 선별하여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식재료업체 정보와 구체적 조치방법까지 실시간으로 일선 학교에 전파해서 사고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식품을 촘촘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통관 단계별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국 현지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확대하고 실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업체의 경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강하겠습니다.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 입증시까지 통관을 차단하고 이미 통관된 식품이라도 필요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능 오염 우려 지역의 식품은 정밀 검사하여 안전기준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면 즉시 통관을 차단하고 국민께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수입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단계의 위해정보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하여 중점 안전관리 검토 대상을 선별하고 위해가 우려되는 식품은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소비자가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 해당 식품이 위해식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해외직구 쇼핑몰에 위해정보를 게시하고 해외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정보를 수집하여 국민께 정

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11쪽입니다.

안전한 농축수산물만 유통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여 등록된 농약을 허용기준 이하로 사용한 농산물만 유통되도록 하고 우유와 수산물을 대상으로 항생제, 중금속 등 잔류물질을 체계적으로 검사하여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농축수산물의 유통 길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내 현장검사소를 확대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대량 유통을 차단하겠습니다. 계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4월 가정용 계란을 시작으로 세척·살균 등을 거친 계란만 판매할 수 있도록 선별포장 유통을 의무화할 계획이고 계도기간을 당초보다 6개월 연장하여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트렌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식품 등 온라인 유행제품을 집중 기획조사하여 위해제품 판매는 신속하게 차단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는 식품과 화장품에 대해서는 의·약사, 식품영양 전문가 등 외부 검증단을 통해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위생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배달전문점, 인터넷 반찬가게 등을 중점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를 주기적으로 재평가하여 섭취 시 주의사항에 반영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유통이력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약, 의료기기, 생활용품의 안심 사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의약품 원료부터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원료의약품 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제조 과정에서 비의도적 혼입이 가능한 유해물질에 대해 허가·등록 단계에서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조 공정 변경 시에도 정부가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허가하도록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2월부터는 특별점검단을 구성하여 국내 제조소와 수입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시 형사처벌까지 병행할 계획입니다.

해외 제조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제조공장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고 위험도 높은 공장에 대해 현지실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의약품 품질·안전 관리기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약전을 전면 개정하여 안전기준을 대폭 보장하고 의약품 품질 고도화시스템(QbD)을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에 반영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의약품 등의 제조·유통 환경도 정비하겠습니다.

제네릭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전성·효능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위탁 생동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제네릭 허가제도를 개선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심사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기존 제품과의 동등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의료기기 제조·유통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4등급 의료기기부터 표준코드(UDI) 부착을 의무화하고 문제 제품의 유통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한약재 중 벤조피렌 함량을 모니터링하고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관리 대상 품목을 확대하겠습니다. 백신의 경우 주된 의약품뿐만 아니라 첨부용제에 대해서도 품질관리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액상 의약품의 용기·포장에서 녹아 나올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병원 의무기록 등 의료현장 데이터까지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사용정보(DUR)에 따라서 금기 의약품에 대해서는 사용 후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약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를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하고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표준 피해보상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마약 등의 불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 데이터를 분석하여 오남용 의심 취급자를 선별하여 집중 관리하는 일상감시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또한 마약류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각 의사에게 마약류 처방내역 비교·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환자가 본인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화장품, 위생용품 등 생활 속 안전수준을 높일 것입니다.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2군 발암물질은 올해까지 분석을 완료하고 안전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식품, 의약품 등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프탈레이트, 다이옥신 등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통합위해성 평가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 마스크의 허위·과대광고와 미세먼지 차단 효과 등을 표방한 식품들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인공눈물, 화장품 등 미세먼지 관련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 사용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일회용 면봉, 화장지 등 위생용품에 대해서 통관 단계 무작위 검사 비율을 대폭 높이고, 생리대 제조·수입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당초 허가받은 대로 제조하고 품질관리하는지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소비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감시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처장님, 오늘 처음 보고 차분하게 잘하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기관이 함께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요약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그리하겠습니다.

안전에 따뜻함과 소통을 더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뇌전증 치료제 등 희귀·난치질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어린이, 여성의 건강 보호도 지원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나머지 일부는 보고를 생략하고, 23쪽의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마약류·환각물질 불법유통 등 오남용 근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남의 클럽 내 마약류 투약 사건을 계기로 불법마약류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주입한 제품의 유통과 흡입 사례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제품은 인터넷, SNS 등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어 추적과 유통 차단에 어려움이 있고,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아산화질소 제품은 식품첨가물로서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지만 흡입이 불법이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인식이 부족해서 오남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선 대책입니다.

마약류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사이버조사단을 중심으로 온라인상의 마약류 불법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사이트를 즉시 차단하고 엄중 고발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마약류 판매조직을 집중 단속하는 등 검경 등과 범부처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온라인 사업자와 협력하여 불법판매 사용자 계정을 차단하고 식약처 홈페이지에 불법거래 간편신고 채널을 개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병원·약국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법유통을 차단하겠습니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정상적인 처방·투약 등 불법사용 우려 취급자를 수시로 집중 점검하고, 당초 6월로 예정되어 있던 부처 합동점검을 앞당겨서 4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식약처가 보유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정보 등을 검경, 관세청 등 관계부처에 적극 공유하여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화질소의 판매 규제를 강화하고 흡입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개인의 아산화질소 오남용 예방을 위해 소형 휘핑가스 제품의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아산화질소 대신 이산화탄소 제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2.5ℓ 이상의 용기에 아산화질소를 충전해서 사용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함께 아산화질소 흡입의 위험성에 대해 홍보도 강화하고 아산화질소 사용 제품의 온라인

유통과 흡입에 대한 점검과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어린이용 인공혈관 등 공급 부족 해소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어린이 심장수술에 필요한 인공혈관이 국내 공급 중단된 이후 재고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간 추진 경과입니다.

17년 4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고어사는 의료기기 사업의 국내시장 철수를 통보하였고 그해 10월 수입허가를 자진 취하였습니다. 당시 고어사는 낮은 보험수가와 적은 수요로 인해 한국에서의 허가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식약처는 미국 내 고어사 제품 등 해외 의료기기를 국내로 쉽게 반입할 수 있도록 자가치료 의료기기 수입허가 면제제도를 도입하였고 환자단체와 관련 학회 등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올해 1월 소아 인공혈관 등 신속 공급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지난달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협조서한을 송부했지만 지난주 금요일 고어사로부터 인공혈관의 경우 한국 내 대체 가능한 제품이 있어 공급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복지부와 함께 인공혈관 제품의 공급 재개를 위해 고어사 본사 긴급 방문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3월 11일 고어사는 서한을 통해 우리나라에 인공혈관 20개를 긴급 공급하기로 하고 앞으로도 공급 재개를 위해 지속 논의하자는 내용을 회신해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고어사가 국내시장에서 철수한 이유 중 하나가 GMP 인증 과정에서의 갈등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앞으로도 식약처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인공혈관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식약처는 공급 부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며, 시행 전이라도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의료기기를 선제적으로 조사, 허가사항 등을 미리 확인하여 별도 심사 없이 수입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29쪽, 참고자료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 현황과 19년 입법 추진 계획은 자료로 같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이의경 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일 현안 중의 하나는 미세먼지 대책인데 이게 부분적으로만 언급이 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한번 미리 국민건강관리에 관해서, 지금 식품·의약품 쪽에 미세먼지가, 야외활동도 많고 야외 식품이라든가 또 미세먼지 관련 여러 가지 의약품, 식품, 굉장히 관련이 많은데 부분적으로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마 집중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께서 인사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가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단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운영, 4대 보험 통합 징수 등을 수행하면서 각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은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을 시행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건강보험은 지난 한 세대 동안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국민들께 많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는 위원님들의 지지와 국민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공단의 전 임원은 국민건강과 품위 있는 노후보장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공단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익희 기획상임이사입니다.

전종갑 징수상임이사입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입니다.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입니다.

(임원 인사)

지금부터 공단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19년도 중점 추진업무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같음하고 2019년 중점 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부터 다섯 번째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가치 실현 선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먼저 보장성 강화로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진료비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정책 평가·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원가 패널 의료기관 확대를 원가분석체계를 정립해서 적정 수준의 보상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 아동일 경우 올해부터 1세 미만 영유아 외래 부담률을 5%로 경감하고 여성은 임신·출산 진료비와 난임부부의 진료비 시술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액 진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반영해서 본인부담 상한선제를 개선하고 재난적의료비는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2022년까지 병상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호스피스의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고령사회에 대응해서 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 확대를 위해 치매·뇌혈관질환 등 고위험군과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와 요양을 연계한 통합서비스 제공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서 서울시 거주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차량 이동지원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분절된 재가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평가체계 개편을 위해 외부 평가자 참여를 확대하여 평가의 공공성을 높이고 평가지표를 간소화하여 요양기관의 업무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적정 수가 결정을 위한 원가분석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장기요양 진입 단계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부당청구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보험재정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부과체계 1단계 개편 결과를 토대로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기반을 공고히 하고 2단계 개편에 대비하여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지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등 보험료 부과 기반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 적용기준을 당연가입으로 전환하여 진료 목적의 입국을 차단하고 보험료 부담의 적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 체납자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와 결손처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무장병원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경찰청 등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여 불법개설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당청구 관리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적발 자료 연계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서 의약품 등재 후 실제 임상자료를 수집하여 사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약가협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증진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20대·30대 건강검진 도입과 폐암 검진을 추가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국가검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의료지도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빅데이터 이용자 편의를 위해 건강정보 리서치 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원격 클라우딩 시스템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지자체와 협업으로 일자리 발굴사업도 하겠습니다.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를 위해 매년 7~10%를 장애인으로 신규 채용해서 22년

까지는 장애인 고용비율을 5%로 확대하고 지역 인재 채용도 활성화하겠습니다.

20년 1월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인하 시기에 맞추어서 다른 사회보험료도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하겠습니다. 보험료 환급금도 발생 즉시 지급하는 등 국민의 편익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김용익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님께서 인사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성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단이 임시국회에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작년 국회에서 연금액의 조정시기를 4월에서 1월로 변경시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해 주신 덕분에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460만 명의 국민들께 연간 78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저희 공단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모바일 안내 확대 등 서비스 혁신을 연초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연금개혁특위 등 범사회적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쳐서 국회에서의 제도개선이 잘 마무리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 공단은 국민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 등 연금제도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도 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투자를 다변화하고 기금운용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단의 임원과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정배 기획이사입니다.

안효준 기금이사입니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입니다.

(임원 및 간부 인사)

이하 간부진 소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해 드린 명단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목차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9쪽의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가입자 확충 분야입니다.

2018년에 건설일용근로자 가입기준 완화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강화로 소득신고자가 2017년 대비 61만 명 증가한 1861만 명으로 확대되었고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 등의 사각지대는 4년 연속 감소하여 467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는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신규가입자를 발굴하고 연금수급권 확충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 두루누리·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기준이 확대되므로 가입 안내를 더 강화하고 지자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가입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모바일과 웹팩스 등 ICT 기술을 활용해서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작년에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일명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기금운용위 산하 전문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올해는 해외투자와 대체투자의 비중을 확대하고 해외투자 지역을 다변화하는 등 기금의 장기수익성 제고를 위한 투자 다변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연도별 실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습니다. 나아가서 글로벌 수준의 운용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정확한 급여서비스 및 부정수급 예방입니다.

작년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해 주신 덕분에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연금지급의 정확도 99.99%를 달성했습니다. 올해는 연금지급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서 확인 조사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여부 조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부24 등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수급권을 더 많이 찾아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2쪽, 연금제도 관련 대국민 소통 및 교육 강화 분야입니다.

작년에는 공단 역사상 최초로 대국민 토론회와 뉴미디어 홍보로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 강

화가 균형 있게 고려되도록 노력하였고 직접 수렴된 국민들의 의견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세대별·계층별로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서 국민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새롭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지사에서 관내 학교와 각종 단체, 기관들을 대상으로 방문설명회를 개최하고 노후준비 교육과 4대 보험 교육 시간 등을 할애해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기자설명회와 국민과 함께하는 연구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작년에는 기초연금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수급률 67%를 돌파했으며 정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2년 연속 A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올해에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분들을 추가 발굴하고 안내방식도 다양화하겠습니다. 또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중년 전담인력 배치를 하겠습니다.

장애등급제 전면개편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업무 매뉴얼 제작 등을 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종합상황반을 운영해서 개편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심사업무의 효율성과 장애인 권익 신장을 위해 신장장애 자동심사체계 도입, 활동지원 이용자 관리 시스템 구축, 근로능력평가 서류 간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적 가치 실현과 기관운영 혁신입니다.

작년에 국민연금공단은 노사협력을 통해 비정규직 1231명을 직접고용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하고 내부의 청년일자리 50명과 노후준비 민간강사 63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였습니다.

또한 전사적인 반부패·청렴 활동으로 3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윤리·인권 경영을 선도하기 위해서 주요 사업 분야에서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인권리스크를 예방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기관 운영 참여를 위해서 시민참여혁신단을 신설하고 확대하겠습니다.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지역 우선구매 원칙을 확고히 세우고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30%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영 현안에 직원들의 참여와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유연근무제와 모성보호시간 확대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공단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께서 인사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원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약 15억 건, 88조 원의 진료비를 효율적으로 심사하였고 중환자실, 환자경험 등 34항목을 평가함으로써 국민이 적정한 비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적극 수행하여 MRI와 초음파의 단계별 급여 전환, 아동 치과진료비 부담 완화,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 인하 등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하여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환자안전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의학적 타당성에 바탕을 둔 환자 중심의 진료비 심사와 기관 단위의 질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심사체계 개편 선도사업을 시작하는 해입니다. 의료계 및 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의료기관에는 자율기반의 심사평가체계를, 국민에게는 적정 비용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지역사회 발전 및 미래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사업,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 지원, 의료기기 규제혁신 등 혁신성장에 필요한 맡은바 업무 수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의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정주 상임감사입니다.

김선민 기획상임이사입니다.

송재동 개발상임이사입니다.

강희정 업무상임이사입니다.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입니다.

(임원 및 간부 인사)

지금부터 우리 원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진료비 심사는 청구 진료비가 관련 법령과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부담해야 할 적정 비용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심사는 사전관리, 심사, 사후관리로 구분됩니다. 18년도에 15억 4000만 건, 88조 1100여억 원의 심사를 수행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심사의 사전관리로 지표연동자율개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이 청구오류를 사전점검하여 수정할 수 있는 진료비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제도를 통하여 18년도에 각각 3500여억 원과 3800여억 원의 부적정 진료비 지출을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진료비가 급증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항목을 선별하여 사전예고 후 집중 심사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응급의료관리료 등 3개 항목을 추가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심사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전산심사 항목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심사사례의 공개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심사 사후관리를 위해 심사내역의 재점검과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착오에 의해 기 청구되었던 것을 자체점검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제를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우리 원은 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부담의 적정화를 위하여 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19년도에는 암질환, 급성 및 만성 질환, 약제 분야 등에서 35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15쪽입니다.

우리 원은 올해 환자경험 평가를 확대하고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치매, 수혈 등에 예비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 지급, 우수기관에 인센티브,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에 의한 장려금 지급 등 평가결과를 보상과 연계함과 동시에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며 난임시술기관의 평가와 재활의료기관의 지정·평가도 계획대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우리 원은 의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의 진료현장 중심에서 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동시에 관리하는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은 7개의 질환에 대한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전문가 심사제도도 정교하게 구축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17쪽입니다.

우리 원은 새로운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의 경제성과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여 급여 등재 여부와 가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6만 300여 개의 항목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우리 원은 약제등재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기의 허가·평가 결정정보를 윈스톱으로 제공하며 의료기기 규제혁신단을 운영하는 등 급여 등재 절차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위, 약제, 치료재료의 적정 가격 설정을 위한 평가 및 보상기준을 개선 중이며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인하, 원가조사 등을 통해 약제 및 치료재료의 사후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우리 원에서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준 비급여 중에서는 보육기 등 88개 항

목의 급여화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급여 확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MRI와 초음파도 18년도에 이어 단계별로 급여 전환 중입니다.

등재 비급여의 경우에는 110개 항목을 완료하였고 응급·중환자, 중증질환 대상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급여 항목의 재평가 및 조정 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약제 분야에서는 약제 기준 비급여 415개 항목 중 173개 항목을 검토 완료하였으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비급여 해소 및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한방 처나요법의 급여화를 시행하며 고도비만 수술치료의 급여화를 검토 중입니다. 응급·중환자 급여화와 관련하여 적정 수가 보상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급병실의 급여화와 민간병원의 신포괄수가제 참여 확대,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와 정보공개 확대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을 위하여 현재 실시 중인 일차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시범사업을 잘 관리함과 동시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모형의 구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회송체계 구축사업을 확대하고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및 방문의료 서비스 모형도 개발·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아동 치과진료비 부담 완화, 장애인·소아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업과 호스피스 서비스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요양병원의 수가를 정비하고 환자분류군 개편을 통해서 요양병원의 기능을 재정비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환자안전 중심의 의료 인프라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 개선, 중증외상 응급의료 진료체계의 개선을 위한 적정 수가 보상 등 환자안전에 대한 수가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

병원에 대한 평가를 새로이 추진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마취, 결핵치료 등 환자안전 영역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고 보건의료자원의 선제적 정비와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 검사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환자안전에 대한 의료의 질과 의료자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의료계가 DUR을 항시 점검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보상하는 연구를 통하여 DUR의 고도화 속도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DUR 정보망의 연계를 확대하여 환자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올해 시작된 유통업계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유통업계와 함께 노력하고 의약품 유통정보의 활용을 확대·강화하여 의약품 유통관리체계를 선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의료 취약지의 간호인력 고용지원 시범사업과 HIRA시스템의 해외 수출 등을 통하여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현장실습 교육, 의료기기업체 대상 보험등재 컨설팅 제공을 통하여 지역사회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2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 열린 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자와 산업계의 R&D에 필요한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며 진료비 확인 자가점검서비스와 민원 사례의 공개 확대를 통하여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계와 우리 원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활성화하고 정책의 개발과 추진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김승택 원장님 고생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실천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대체토론 및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김승희** 위원 예.

○위원장 **이명수** 김승희 위원님.

○**김승희 위원** 자료 요구 관련해 가지고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건보공단 이사장님께 자료 요구를 하겠는데요. 최근에 대통령 자녀인 문다혜 씨가 건강보험 급여 사용과 관련된 논란이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건보공단에다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오전에 공단 측에서 헌법 제17조와 국정감·조사법 제8조에 따라서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임시국회이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정감·조사법 제8조는 해당되지 않고, 헌법 제17조에 따라서 사생활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다혜 씨는 국민의 세금으로 보호를 받는 공인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그 가족은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대상입니다. 그래서 공인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하고는 조금 다르게, 간단하게 해서 다시 자료 요구를 하겠는데요. 문다혜 씨가…… 지금 이게 언론에 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부군에 해당되는 서창호—38세입니다—이 분이 지금 하여튼 장기체류인지 아니면 이주인지는 모르지만 해외로 나갔고 그 아들은 국제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의 문다혜 씨 가족의 개인별 자격 변동 내역, 다시 말해서 지역가입자인지 아니면 직장가입자인지 이것은 알려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개인별 건강보험 급여 사용내역, 그리고 또 외국에 체류하다가 들어와서 진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보험료에 대해서는 부과 현황, 보험료를 냈는지 그리고 체납되어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 순서가 한 20번 정도 되니까 제가 질의하기 전까지 간단한 거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을 통해서 건보공단 이사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명수** 제출 대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판단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판단이 된다고 하는 범위 내에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남인순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남인순 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저희가 항상 회의를 하다 보면 자료제출 문제 가지고 여러 번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자료제출

은 해당 기관에서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 사실은 국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 정부하에서도 2014년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개인정보에 있어서 국회 제공과 관련한 법제처 회신입니다. 회신과 법원의 판결에서도 개인 사생활 침해 금지를 이유로 국회 자료 요구의 한계를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개인정보 제공이 법적으로 위반 소지가 높기 때문에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자료제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법 54조에 따르면 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내국인의 경우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나 또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지가 일단 됐다가 나중에 입국신고를 하거나 입국이 확인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건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번에 청와대에서도 문다혜 씨의 경우에는 국외 거주 목적으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국하면 당연히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미 사실로도 얘기가 됐고 해명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를 반복하면서 자료를 요청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지금 자료제출 요구와 여러 가지 개인정보 차원에서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김승희 위원**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질의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면 되는 거지……

○**위원장 이명수** 자, 이렇게 하시지요.

이사장님!

○**김승희 위원**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의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평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말씀은 발언권 얻어서 하시고 가만히 계세요.

이사장님, 지금 말씀한 부분에서 요구와 제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개인정보는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지요. 받아야 되는데,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

면 하시고 이것 때문에 또 우리가 양측이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게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고 개인정보 문제여서 사실은 우리 직원도 이분들의 자료를 들여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들여다보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요청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한 번도 제출한 전례가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제출한 전례가 없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런 유사한 사례로 자격이나 급여 사용내역 등등에 대해서 개인적인 차원으로 자료 요청을 받았을 때 낸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그것은 국민 누구나 그렇습니까, 지금 특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아니지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아니, 예를 들면 지역가입자나 아니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볼 때는 개인정보 하고는 관계없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만 하십시오. 전혀 지금 말씀한 게 안 되는 겁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개인 차원으로는 제공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제가 요청하면, 제 정보 제가 할 수는 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본인은……

○**위원장 이명수** 저는 할 수 있고 제삼자는 못한다 그 말씀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제삼자가 요청해서 그렇게 드릴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이것 가지고 논의를 많이 벌이기는 그런데…… 지금 개인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래서 아까 남인순 위원이 말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은 보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필요한 판단과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인데 그것을 개인으로만 볼 수는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동의서를

받지 않고 개인식별이 가능한 자료를, 어떤 특정인에 대한 자료를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이것 가지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필요한 관련 개인정보나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한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조금 시간을 가지고 판단할 시간을 주고 우선 진행하도록 하면 어떨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이 공단하고 상의하고 관련 상임위나 해서 좀 판단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범위에 대해서.

그러면 예정된 대체토론과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위원장과 간사들 간에 합의한 대로 1차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진 위원** 신상진 위원입니다.

식약처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우리 상임위가 오랜만에 열려서…… 작년에 제가 먼저 류영진 식약처장한테 요구했던 것 중에 온라인 불법의약품 거래가 지금 심각합니다.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점차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요구한 게, 식약처 내에 사이버조사단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제대로 성과를 못 내요. 그래서 경찰청하고 사이버조사단하고 협조하고 하라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이게 자꾸 줄어들고 없어지지 않고 더 기승을 부리는지…… 향정신성약도 있고 낙태약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해 두는 식약처가 돼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에도 적극 공감하고 앞으로 행정안전부나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고 해서 이와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모든 제반 요건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적극 검토하시고, 또 제가 그래서 그게 잘 안 될까 봐 기우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했는데 식약처에서 ‘법이 통과되면 하지’ 이라고 그냥 손 놓고 있지 마시고 현재 있는 여건에서 최대한 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식약처가 이런 것 안 하고 뭐 해요?

그리고 김승택 원장님, 뇌전증의 전극 문제 때문에 제가 작년에 간담회 한 것 알고 계시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예, 알고 있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것도 지금 해결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예.

**○신상진 위원** 미주신경자극술이라 그래서 뇌전증 중에 국소 뇌전증의 치료술이 있는데 뇌전증 중증환자들이 이게 심평원에서 완전 삭감이 돼 가지고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상태래요, 지금. 그런데 심평원의 신경외과 전문의가 심사도 하고 있지만 사실 뇌전증 전문가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과는 그렇지만.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길게는 설명 안 드리고 미주신경자극술 삭감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건지, 아니고 그냥 신경과 전문의 이런 사람들이 대충 삭감해 버리고 해서 현장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못 받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조사하시고 저한테 향후 처리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예, 알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뇌전증 두개강 내 전극삽입술 그것도 결론을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예.

**○신상진 위원** 알고 계신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과라든가 신경외과의 뇌전증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예, 빨리 하세요.

그런데 그 전문가라는 게, 하여튼 현장에서 진

료하는 최고의 뇌전증학회라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세요, 다른 전문가 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알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 작년에 제가 국감 때 직원 성과급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저도 그 이후에 보니까 올해 1월에도 한국국토정보개발원인가 거기서 노조위원장을 파면한 것이 정당하다고 항소심에서 판결도 나고 공공기관들이 아주 도덕적 해이, 또 성과급에 대한 공공기관의 기본 원칙을 어겨서 재분배하는 이런 문제가……

아마 올해 또 공단에서 성과급을 봄인가 여름에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몇 차례 아마 노조하고 협의도 하고 그러신 모양인데 이것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취지에도 안 맞고 하니까 재분배 안 되도록 이번에 철저히 좀 하시겠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로 저희가 노동조합과 여덟 번이나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근기법에 따라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지 되는데 동의에 이르지 못해서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상진 위원** 하여튼 저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런 쪽에서 고발하면 또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문제, 또 공단의 운영…… 저는 스스로 해결하기를 원해요, 스스로. 그래서 이사장님이 그런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신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하십시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순례 위원님께서 중간에 오셔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2월 달에 공청회에서 김순례 위원께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5·18 유공자 모두가 괴물 집단인 것처럼

럼 말씀을 하셔서……

물론 발언의 의도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지요. 전당대회 즈음해서 표를 의식해서 한 발언일 수도 있고 또 하시다가 너무 나간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와 관련해서 수많은 희생자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고 특히 5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자식을 가슴에 묻고 정말 한 맺힌 삶을 살고 있고 이 추운 겨울에 바닥에서 노숙하면서 농성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우리 복지위에서 김순례 위원께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최소한의 어떤 입장 표명이나 유감 표명 정도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의 중간이기는 하지만 김순례 위원께서 오셨기 때문에 김순례 위원께서 그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김광수 위원님께서 오늘 회의 진행 과정상 중간에 별도의 말씀을 하셨는데 김순례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신다 그러면 발언권을 드리구요.

○**김순례 위원** 됐어요. 제가 좀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우선 진행을 하고 다시,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 유재중 위원님이 너무 급하시다니까 제가 다음번으로……

○**위원장 이명수** 질의를 바꾸겠다 하신 건가요?

○**柳在仲 위원** 질의를 좀 바꿔 주나요?

○**김상희 위원** 예, 바꿔 드릴게요.

○**柳在仲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仲 위원** 김상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 급해서. 그런데 자꾸 의사진행발언하고 이렇게 상임위 진행이 방해가 되네요.

건보공단 이사장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예.

○**柳在仲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자료는 지난해 6월에 보건복지부가 국회 등에서 건강보험 먹튀 논란으로 수차례 지적되었던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관리 미비점을 좀 보완해 가지고 도덕적 해이를 막고 내·외국인 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이

지요. 이사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저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예, 알고 있습니다.

○**柳在仲 위원** 그렇지요, 잘 알고 계실 거고.

이 개선안의 후속 조치로 작년 12월에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국내 거주 6개월로 강화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예.

○**柳在仲 위원** 지금 보이지요?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의 기사처럼 개정 후에도 재외국민 커뮤니티에 건강보험 꿈수 방법이 올라올 정도로 아직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예.

○**柳在仲 위원** 이 기사를 보셨을 거고요.

허술한 이 국적법과 재외동포법으로 국내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柳在仲 위원** 그렇지요? 이사장님께서도 직접 법무부 및 외교부와 협의를 해서라도 도덕적 해이로 인한 건강보험 누수가 성실 납부자에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예.

○**柳在仲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이렇게 엄격히 법을 지켜야 되고 잣대를 댈고 위층, 대통령 따님의 문제로 이게 다시 불거졌어요.

보시는 자료는 문재인 대통령의 따님께서 자녀를 전학시키기 위해서 작성한 학생원서인데요. 건강보험법 10조에 따르면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가입자는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있지요? 건강보험법 10조, 알고 계시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예, 그렇요.

○**柳在仲 위원** 그러면 이 원서대로 보면 해외 이주라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자격 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것 아닌가요? 했지요,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해외 이주가 사실이라면 그렇습니다.

○**柳在仲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리되면 진료라든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법을 지켜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반론을 보면, 청와대에서의 반론인데요, 건강보험법에 따라 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내국인의 경우에는 출국 시 급여가 정지될 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입국 시 급여 정지는 해제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그것은 맞는 말인데요. 그 당사자의 주민등록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경우가 다르지요.

○柳在仲 위원 아니, 확인을 하셔야지요. 맞는다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사장님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슨 법에 의해서 맞습니까? 몇 조입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예?

○柳在仲 위원 이게 맞다고 하는데 몇 조에 나온 내용으로 맞다고 합니까? 지금 맞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읽어 줬는데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했잖아요.

제가 말한 게 건강보험법 54조입니다. 54조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급여의 정지에 대한 규정을 제54조에 별도로 두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주택을 매각하고 어린 자녀를 해외로 전학시킬 정도면 제54조의 급여의 정지가 아니라 제10조의 자격 상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0조제3호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로 봐야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지 않아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론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아니요,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 사항을, 그게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柳在仲 위원 아니, 이사장님 제가 정확하게 각 부서에 다 확인했어요. 이사장님 말하는 게 그냥 변명인데요. 10조의 자격 상실이나 54조의 급여 정지나 하는 논란이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 재외국민에 대한 법적 기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외국민등록법에 보면요, 이사장님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재외국민등록법 보면 제2조에서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도록 하였고 외교부가 이 명단을

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부처에, 외교부라든지 행안부에 다 확인해 보면 이것은 제10조의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격 상실로 관리하는 것이 건보의 취지에 맞고 정부가 발표한 개선안의 취지에도 맞는 겁니다. 이렇게 맞는데 왜 대통령 따님은 이렇게 엉뚱한 54조를 들어서 급여 정지라 그러면서 비껴 나가려고 하는 겁니까? 이러니 재외국민이고 성실 납부자에게 더 어떤 불이익이 되는 거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사장님, 국민들이 이런 도덕적 해이로 인해가지고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공단의 임무를 확실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권을 추진하고 있는 이사장님의 강력한 의지 존중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 대통령 따님의 사항을 자격 상실의 기준으로 볼 것인지 급여 정지의 기준으로 볼 것인지를 검토하셔서 다음 월요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전까지 좀 확인해 주십시오.

○김상희 위원 지금 답변을 하세요.

○柳在仲 위원 아니, 답변을 지금 엉터리로 하고 있어요. 변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아니, 그게 아니고요……

○柳在仲 위원 확실히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분명히 지금 확실히 답을 해 줘야 되지. 자격 상실입니까, 급여 정지입니까?

○김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하세요, 건보공단에서. 이게 지금 계속 이슈가 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아니요, 건보공단은 기본적으로 업무가 외교부, 법무부의 변동 사항을 행안부가 받고 행안부의 주민등록 사항 변경이 전산으로 매일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업무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전산으로 다 받게 되어 있고 매일 그 게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변동 사항이 있으면 이미 적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柳在仲 위원 아니지요. 저는 외교부하고 행안부하고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확인을 안하고 있는 거예요, 건보공단에서. 대통령 딸이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건지 계속 재외국민 건강보험 먹튀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말씀은 강하게 하면서 이것은 유야무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확실히 나중에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유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그런데 굉장히 좀 유감입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아, 질의가 아니고?

○**김상희 위원** 예, 질의 들어가기 전에.

김승희 위원 자료 제공과 유재중 위원님께서 제가 순서까지 바꿔서 양보를 해 드렸는데…… 제가 듣기에는, 참 어렵사리 우리가 상임위를 열었는데 정치공세성 질의와 자료 요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구심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확한 팩트를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답변을 하실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또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소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련해서 정확한 팩트를 위원들께 보고를 해 주시고 관련해서 언론에도 브리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위원님, 잠깐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김상희 위원** 위원장님께……

○**위원장 이명수** 지금 의사진행발언하시니까……

○**김상희 위원** 제 의사진행발언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끝났어요?

예, 잠깐 말씀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모든 사항이 다 온라인으로 전산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그 대로 전산 처리가 다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인의 그 정보가 정확히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를 알려면 저희가 외교부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교부에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해서, 공문으로 업무상의 일로 해서 자료를 받아 올 수는 있는데, 그렇게는 할 수 있으나 그 자료가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땠었다고 하는 것을 언론에 얘기하거나 또는 위

원님들에게 전해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안의 개인정보 보호에 의해서.

그래서 개인정보법의 모든 절차에 의해서 그 개인정보를 공표하려면 다시 개인정보법에 규정돼 있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아볼 수는 있으나 밖으로 개인정보를 노출할 수는 없습니다.

○**김상희 위원** 제 의사진행발언 관련해서 조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서요.

○**위원장 이명수** 예, 말씀하세요.

○**김상희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부정수급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 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세한 정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파악하고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 위원들께서는 이게 부정수급의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김상희 위원** 판단해서 하십시오.

○**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원래 예정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개편안이 발표됨에 따라서 수익률 1%가 상승하면 기금고갈 시점이 5년 정도 늦춰질 수 있다는 추계가 있었습니다. 정말 국민연금 수익률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국민들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기 악화로 해서 국민연금 수익률이 -9.2%, 6조 원의 손실을 보았다 해서 굉장히 크게 보도되고 국민들의 걱정이 컸습니다. 지금 문제는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지, 도대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김성주 이사장님,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손실을 계속 보고 있는 상황입니까? 빨리 대답해 주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저희가 매년 매월 운용실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0일

날 기준으로 저희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1월, 2월 들어서 국내외 증시의 호조로 인해서 작년 손실들을 좀 만회하고 이미 상당히 큰 이익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김상희 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까, 2월 현재?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잠정치입니다만 국내외 증시 호조로 약 4% 안팎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27조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상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잠정 4% 정도 그리고 27조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연금이 전체 자산의 35%를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대형주 중심으로 84%, 대형주에 쏠려 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계속 공단에서도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국민연금이 장기투자자로서 단기수익률보다는 장기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또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쨌든 이게 회복하는 추세라서 다행이기는 한데 현재 이 수익률 회복이 노후자금을 지켰다는 안도감을 갖게는 하지만 이건 일회일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재구성해서 국민들의 이런 불안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식약처장님, 지금 소아 심장병 환아들 문제, 고어텍스 인공혈관 공급 중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국민들의 분노가 아주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은 또 자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도 상당히 큰 것입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해당

업체가 혈관을 20개 공급하기로 한 것이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김상희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공급 재개를 잘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서서 보고도 했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우선 이번 건은 적극적으로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상회의와 출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희소·긴급도입 필요 기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모니터링을 해서 공급 수량을 사전에 파악해서 정부가 능동적으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동안 식약처가 대처했던 것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가 국내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이 2017년 4월이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김상희 위원** 그래서 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서 이것이 불거지고 허둥지둥해서 겨우 20개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업체가 한국 철수하고 나서 한 번도 인공혈관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한 번도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의약품 공급 문제가 대두된 것은 최근의 일이어서 최근에 저희가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잘 모르시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시지만 결국은 그동안 식약처에서 손을 놓고 한 번도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뒷북 행정으로 겨우 20개를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철수 통보하고 실제 철수할 때까지 6개월 동안이 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업체를 설득할 기회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수하고 나서 식약처가 한 조치는 규정 마련하고 또 수입사를 중용해서 이 혈관 제품의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면피 수준으로 했던 이런 조치들을 보면 참 국민들이 분노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어쨌든 정부가 2년이

라고 하는 세월을 허송하게 됐는데 앞서서 말씀 하셨습니다. 식약처가 이제 제대로 책임성을 갖고 대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소아 당뇨환자 의료기기 해외 직접구매를 하는 사건이 불거져서 제가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통과가 됐고 지금 시행규칙 마련 중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상태인데, 국가가 주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요.

지금 식약처 산하에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김상희 위원**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여기에서 지금 의약품만이 아니라 의료기기 공급 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현재 의료기기안전정보원과 의료기기 관련 기관·단체 등에 공급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의료기기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협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의료기기 분야와 관련해서 이번의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과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지금 이게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것 왜…… 대체로 아까 말씀은 했는데 그 경위와 원인, 재발 대책에 대해서, 지금 규정을 완화했다고 그러는데 새로 오셨으니까 충분한 파악을 해서 결과를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위원장 이명수** 다음은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기동민 위원** 더불어민주당 성북을 출신 기동민입니다.

오래간만에 상임위가 소집이 돼서 되게 설레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되게 불안했습니다. 회의가 제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공세들도 있을 거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텐

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늘라운 절제력들을 발휘해 가면서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님,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보면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그렇습니다.

○**기동민 위원**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 특히 민감한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는 건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그러니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15조의 몇 가지 조항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는 절차, 범위를 따라야 됩니다.

○**기동민 위원** 명확한 사실관계는 사실관계대로서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밝혔던데 대통령의 따님이 국적 변경이나 영주권 획득 이런 사실들이 아니기 때문에 건보공단에서…… 아니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를 무단으로 아니면 불법적으로 활용했고 이용했다 이런 지적은 잘못된 것이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지금 문다혜씨의 국적법상의 지위 또는 주민등록법상의 지위를 개인적으로 다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는데 체류기간이 사실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까 6월부터 10월 이렇게 하면 몇 달이 되지 않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했을 거라는 생각은 잘 들지를 않아서요.

○**기동민 위원**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외교부라든지 행안부에 그 자료가 제출이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협조 관계는 구축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 그런 확증이 있습니까? 물증이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지금까지는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기동민 위원** 사실은 사실대로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식약처장님, 승리 씨 등 각종 클럽에서 소위 말하는 GHB(감마-하이드록시뷰티르산) 이걸 포함해서 마약류가 오남용되고 있는 실정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특권층 아니면 일부 일탈하고 있는 이런 계층에 국한된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 국민 생활 깊숙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고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아직 제가 마약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동민 위원**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일부 계층들의 사고인데 아주 광범위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마약 청정국의 지위는 지금은 좀 잃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마약 청정국이라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종전에는 마약 청정국에 저희들이 포함됐는데 지금은 그런 지위는 잃었다고 보고요. 지금 상당수 계층……

○**기동민 위원** 그런 말씀 하시면 아마 국민 일부에서는 되게 안이한 현실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화 ‘아저씨’ 등 이런 데에서 보면 물뿌이 사용되어지는 게 영화 속에 그냥 나타나는 허구의 장면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지요. 그게 영화가 나온 지가 십수 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정도로 드러나는 것은 그리고 회자되고 있는 것은 국민 생활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잘못된 일탈층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유포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마약의 피해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마약류를 구입하고 흡입하는 데 자유로운 나라 대한민국이 되어 가고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아프게 들으셔야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기동민 위원** 이런 몇 가지 정도의 피상적인 대책을 가지고는 근절하기가 어려워요. 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텐데 이런 정도의 그냥 평상시에 하는 이런 대책들을 업무보고 올해 처음 하는 건데 이렇게 나오시는 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음번에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와 그리고 엄단 방안, 검경과 합동 종합대책 이런 부분을 같이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지난번에 사실은 저희들이 국조실 주관으로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검찰·경찰·관세청 그다음에 해경 등등 해서 대책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주로 검경은 단속기능이고 처벌 기능인데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 식약처가 차지하

는 역할과 책임 이런 부분들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알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차장님, 내친 김에 한 번 더 여쭙볼게요.

작년 국감할 때 제가 차장님의 연구논문 이런 부분을 한번 인용한 적 있는데요. ‘2007년 이후에 국내에 등재된 신약의 가격이 OECD 국가 평균 가격의 45% 수준이고 보험 등재된 전체 신약의 73%를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이런 연구보고서를 인용을 했었는데 차장님 함자가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그 보고서는 2013년에 수행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연구했던 것은, 우리나라의 보험약이 2만 개인데 저의 연구대상은 특허가 끝난 신약 222개에 대한 연구였고요. 그다음에 연구를 비교하는 방법론이 되게 다양한데 그게 도매가 그다음에 공장도가, 소매가인데 저는 소매가를 갖고 해서…… 다양한 방법론이 있고 한데 일부 우리나라 전체 약가의 수준으로 오도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좀 수정하고……

○**기동민 위원** 그래서 외국과 단선적으로 약가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가격체계도 다른 거고 이중가격제도도 있는 거고 할인제도도 있는 거고 비밀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인데 마치 교수님—그 당시에 교수님이시지요—의 논문이 그렇게 신약에 대한 어떤 확증을 주는 그런 근거 자료로 활용되는 것 같아서 대단히 못내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직접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위치는 아니지만 저는 모든 국민의 편에 서서, 소비자 편에 서서, 물론 제약사와 등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제약사는 제약사대로 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그 속에서 저야 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아주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식견과 해안들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동민 위원** 저도 1분 더 주실 거지요?

○**위원장 이명수** 앞으로 1분 하시면 2차 질의

때는 1분씩 감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동민 위원 위원장님께서 1분 계속 주셔 가지고……

○위원장 이명수 1분은 쓰시는데 오늘부터 다음 2차 질의 할 때는 늘어난 시간만큼 줄이는 것 양해해 주십시오.

○기동민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하십시오.

○기동민 위원 인공혈관 관련해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 아니겠습니까?

차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2년 동안 허송세월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저희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기동민 위원 죄송스럽다고요? 그러면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김승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긴급·희소 필수 의료기기 도입에 대한 법령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허가 복원이라든지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국민 입장 또 환자 입장에서는 부족하다는 말씀……

○기동민 위원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리피오돌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그럴 때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제약사라든지 아니면 독점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약사라든지 이런 기관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은 되게 이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기업의 이윤을 내려고 존재하는 집단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다, 도덕적 책무를 다해라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결국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편리가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다면 관리감독 당국의 직무유기입니다. 업무 해태인 거고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시겠습니까? 장관께서는 WHO 총회에 가서 문제제기를 하겠다…… 어느 하세월에요.

20기 구입해 가지고 됩니까? 좀 기민하게 움직이시고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식약처가 최소한 그런 모습으로 비쳐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그래서 아까 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험수가나 이런 게 복지부와 관련되어서 복지부 그다음에 환자단체 그다음에 관련 단체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이런 유사 사례가 앞으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한 근본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조속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더 이상 국민들 불안하게 하지 마십시오. 대책 가지고 오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  
○위원장 이명수 기동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희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오래간만에 임시국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 남용과 건강보험과 관련된 먹튀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건보공단 이사장님도, 오늘 업무보고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정확하게 청와대에서 불법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지만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을 이것을 마치 정치적인 공세나 소모적 논쟁으로 평하는 민주당 위원님들의 발언에 저는 심히 유감을 표명을 합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고 또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평한다는 것에 대해서 불과 2년 전으로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려 보면 본인들의 자화상을 볼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불법이 아니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제가 자료 요구한 건 아니고요.

건보공단 이사장님, 문다혜 씨가 자녀 유학 등 어떠한 목적으로라도 장기체류를 함으로써 보험료는 면제받고 그리고 필요하면 한국에 들어와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것이 아까 유재 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보험법 제10조 3호의 자격 상실인지 아니면 제54조의 정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하셨습니다. 그것은 대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해외 이주나 국적 상실을 목적으로, 국적 상실이 따르는 해외 이주나 아니면 장기체류로 해 가지고 이주법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면 정지됐다가 들어와서 즉각적으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예.

○김승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오랫동안 밖에 나갔다가 본인이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고 있고 필요하면 한국에 들어와서 의료 혜택을 받고 그리고 보험료 부과는 연체하거나 미납해도 지금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질문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제조건으로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거예요.

그게 정치적 발언입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아니요, 그러니까……

○김승희 위원 그러니까 자료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응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 먹튀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고 현행 법상 불법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 대책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물론 대책은 마련해야 됩니다.

○김승희 위원 마련해서 저한테 자료를 설명해 주세요. 마련을 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대책을 마련해서……

○김승희 위원 청와대의 해명에 의하면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기체류라 하더라도 일시정지이지 들어와서 얼마든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받게 되면 나중에 보험료를 부과하면 그 보험료 내면 된다는 거예요. 한 달 치 내면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받았으면.

그리고 또 나가요. 또 나갔다가 자기가 필요하면 들어와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해도 국내에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누가 보험료를 낼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체납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얼마나 지금 체납됐는지, 도대체 문다혜 씨뿐만 아니라 이런 케이스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에 대해서 건보공단은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일반……

○김승희 위원 그래서 그건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질의를 또 해야 되니까……

이의경 식약처장님, 식약처장으로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자타가 공인하게 본인의 전문성이 높다는 것,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식약처장이라는 위치는 공인으로서 전문성 못지않게 도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외이사직으로 역임한 바가 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어디의 사외이사직을 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JW중외제약과 유유제약을 했습니다.

○김승희 위원 언론에 의하면 두 군데 있지요.

둘만 했어요, 더 많은 곳을 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두 군데만 했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중외제약은 리베이트로 수사 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몰라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들은 바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유유제약은 지난 1월 달에 식약처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알고 있어요? 모르시지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식약처가 중외제약은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보고받으셨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그 내용은 제가 잘,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승희 위원 보고 못 받으셨……

지금 언제 취임하셨지요? 며칠 안 됐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김승희 위원 잘 보십시오.

이렇게 제약회사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본인이 객관적으로 행정처분도 해야 되고 인허가도 해야 되는 식약처장의 위치에 있으면 국민의 눈높이는 과연 제대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

까 하는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화면 좀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굉장히 능력이 출중하셔서, 최근 3년 동안에 연구용역을 수주한 것을 우리가 교육부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55건의 연구용역을 수주를 했고 그 총액이 65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연구용역의 용역 수가 43건이에요. 액수로는 35억입니다. 그리고 제약회사는 매출 상위 20위 안에 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연구용역을 제약회사로부터 받아서 수행을 하고 한 달에 거의 1건 이상 완료를 했고 그리고 그 연구용역비는 1억 이상입니다.

이렇게 많은 제약회사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가지고 제약회사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이의경 처장님께서 과연 식약처장으로서 중립적으로 앞으로 처장의 업무를, 많은 인허가와 이권 관계에 대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식약처장님이 어떻게 할 것이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한번 소회를 아니면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본 연구 내용은 제가 주로 전문으로 하고 있는 신약의 가치평가에 대한 근거를 생성하는 내용입니다. 식약처의 어떤 이해관계라기보다는 의약품의 가치에 대한 평가이고 그것은 신약개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현재 식약처장으로 임용된 이후부터는 과거의 연구용역 이런 것과 무관하게 중립성과 공공성을 늘 염두에 두고 제 직의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그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회사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회사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갖다 바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건도 아니고 이렇게

수많은 건에 대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번 인사에 대해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이것을 변명하거나 해명하는 게 아니라 그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더 열심히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수** 지금 말씀한 대로 처장님, 정말 공직자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업무 처리해 달라는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世淵 위원** 부산 금정구 출신의 김세연입니다.

식약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앞서 학계에 계실 때 수행하셨던 많은 연구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향후에도 어떠한 오해나 우려를 남지 않도록 각별하게 더 직무 임하실 때 유의해서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대책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르신들의 경우에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여러 약물들을 동시에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노인인구의 약 23.6%를 차지하는 독거 어르신들과 또 농촌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주변에서 많은 정보를 접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약품을 구분하거나 또는 복용 지도를 제대로 설명듣는 기회가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되지 않은 의약품을 다량으로 복용할 수 있는 상황도 항상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대에서 2014년에 산학협력단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인슐린 또는 의약품 복용을 약사의 복용지도 없이 자가 복용하는 경우 또 속쓰림 현상과 비용 부담 때문에 새로 처방받은 것이 아니라 기존의 처방약을 복용하는 경우 또 몸에 맞지 않는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경우 등이 있

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에는 요양원뿐만 아니라 은퇴과정에 대해서 약료서비스는 해당 지역의 약국에서 직접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의약품의 재고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오남용 또는 과용 실태가 있는지를 항상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에게 제공된 의약품은 문서화해서 그 수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지역 약국에서 의약품 판매와 복약지도는 물론 재택요양관리지도, 방문약제관리지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보면 7900만 명의 노인과 간병인들에게 복약지도와 약에 대한 문제해결에 반드시 시간을 쓰도록 하는 머스트 포 시니어스(Must for Seniors)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약사법 제52조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약처장은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의약품 안전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료 요구를 해 봤는데 2014년도 이후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약품 오남용 실태조사 결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시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하고 있는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2015년도에 이 관련 연구를 수행했지만 역시 전문가 의견을 주로 분석했고 실제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는 여기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은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의약품 피해자 구제 업무를 수행하는 식약처와 관련 기관에서 실시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약물 오남용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가 전혀 없고요. 또 실제로 별도의 이를 위한 사업이나 예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의약품 사용안내 및 홍보 사업을 진행한 것을 보니까 2015~2016년에 어르신의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안내 리플릿을 각 지역 보건소와 경로당에 배포한 것이 그나마 유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 함께 계시는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이 처장으로 계실 때 이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농촌이나 도시 독거노인의 약물 오남용 실태가 심각하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저희가 복지부와 식약처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관련 자료가 없다는, 그 책임기관이 어디

인지 서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나중에서야 식약처에서 자료 없다는 답변을 뒤늦게 받았습시다.

그래서 취약계층의 약물 오남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방안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식약처장님 간단하게 좀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노인·소아·임산부 등의 약물 오남용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부 연구는 했지만 체계적인 실태조사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 관련된 실태조사를 별도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世淵 위원** 꼭 해 주시고요.

앞서 김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아용 인공혈관 독점업체 고어사가 국내 공급을 중단한 지 2년 동안 전혀 손을 놓고 있다가 아주 큰 위기 상황이 올 뻔했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례를 보니까 간암치료제 리피오들을 독점 공급하는 프랑스 제약사도 약가 인상 요구 그리고 철수 예고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기존 가격의 몇 배를 인상해 주고 철수를 막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다른 분야에서도, 아까 필수 치료제료 확보 시스템을 철저히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해 주셨습시다만 다른 사례에서 비슷한 반복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보공단과 국민연금에서 일자리안정자금 관련된 예산 살포에 대해서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하지만 시간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탐사보도에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지원심사원 10여 명이 급기야 언론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기들도 얼마나 양심에 가책이 느껴졌으면 그랬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사업주 직계존비속에게까지 지급하고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까지 지급하도록, 마지막에 중복 지원 그리고 미신청 사업자에게까지 이렇게 살포식으로 파행적인 지급을 해서 11월까지 59.6%에 이르렀던 집행률이 연말에 가서 84.5%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참 참담한 심정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금 소진에만 열을 올린 흔적이 곳곳에서 나오는데요. 심지어는 이중 지원되고도 회수하지도 않은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가입자 6만 6000명이 넘는 한 아파트관리자모임 카페에서 이중 입금 후에 상계처리 되지 않고 쌓이는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문의 및 답변글이 줄을 이었고요. 또 공동주택 관리사업체의 이중 입금이 잦았다는 것은 일자리지원심사원들 단톡방에서의 내용 캡처된 것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무리한 예산 살포를 서슴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공단에서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일자리안정사업 자체의 여러 가지 중복 지원이나 이 문제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지금 대행을 해 주는 입장이어서 답변할 내용이 아닌 듯 싶습니다.

다만 저희는 노동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일자리안정사업이 건강보험료 지원과 같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협조를 하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金世淵 위원** 정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이 아니었다는 점은 동의할 하시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그러니까 이런 경우 소위 위수탁 업무라고 하는데요. 정부에서 저희한테 이러한 일을 해 달라고 임무를 맡기면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金世淵 위원** 아무튼 이런 업무 행태가 객관적으로 봐서 정상적이 아니었다는 것은 다들 동의를 하실 거라고 믿고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도 두루누리 지원사업, 즉 보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연계해서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토록 하는 그런 고유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근로복지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저희 연금공단에서는 그와 같은 일은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金世淵 위원** 그래서 이런 유사 사례가 관련

업무를 하는 공단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 환기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 각별한 유념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위원장 이명수**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정부 차원의 일이면 직접 고용노동부나 다른 복지공단에서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의 일은 제대로 일자리가 되는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회의 시작한 지 2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위원**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히 하고 본질의……

**○위원장 이명수**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윤소하 위원** 제 앞에서 바로 순서가 끊겼다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물론 상임위를 계속 하다 보면, 또 정부부처 관계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회를 통해서 약간의 휴식시간을 갖는 것은 통상적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긴급 의총이 있다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긴급한 의결사항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를 한다고 해요. 보니까 규탄대회를 하고 오셨는데, 물론 위원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시니까 먼저 오셨는데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규탄의 내용을 제가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에 응당하게 오히려 회의 진행자를 지정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게……

특히나 오늘 식약처장은 신임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질의들도 있고 이런 것인데 자유한국당의 의총 내지 또 규탄대회 이것을 통해서 상

임위가 아주 길게 이렇게 정회를 하고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유감을 표명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명수** 그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하는데 사실은 간사 입장을 통해서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정회가 아니라 아까 먼저 시간에, 원래 3시 반부터 하도록 정회를 요구했는데 제가 아무리 자유한국당 소속이지만 그것은 안 된다, 더구나 오후에 회의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정회는 안 하고 잠시 30분 뒤에 가서 잠깐 참석하는 것은 위원장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한 거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때문에 정회한 것은 아닙니다.

대개 우리가 2시간 내지 2시간 반이면 정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윤소하 위원** 규탄대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이명수** 아니, 뭘 하는 것은 우리가 봐야 아는 거지요.

**○윤소하 위원** 상임위가 열리는 부분은 제외하도록 그것을 지도부에 정확히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위원장 이명수** 의원총회예요. 규탄대회는 가서 보니까 그런 거지요.

그다음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위원** 알겠습니다.

식약처장님, 먼저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사회약학이라는 분야의 선구자이시고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이신데, 청와대에서도 연구기관과 대학에서의 연구활동을 통해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시장의 관리체계를 잘해 낼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기대가 큼니다.

여러 가지 질의가 있는데 식약처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짧게 답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요 경력을 쭉 봤습니다. 살아오신 길을 보면 어떤 인식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다 강조되지 않으면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더라고, 자칫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생각하는 식약처의 임무는 첫째가 건강과 안전입니다. 그것은 동의하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동의합니다.

**○윤소하 위원** 사후관리는 없어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관리 부분은 사전예방적 차원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는 것이고 그것을 총괄하는 책임을 맡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처장님께서 취임 일성으로 국민에 대한 안전관리와 함께 산업발전의, 특히 의료산업을 이야기하셨지요, 또 그 부분의 전공을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을 균형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상당히 우려를 갖습니다.

균형 있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식약처장의 본연의 임무는 어디에 방점을 두고 나머지를 귀속시키고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철학의 문제입니다. 관점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먼저 되어야만이 여러 가지의 정책과 행정업무를 총괄하는데 그 기반하에서 국민에게 정확히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과 산업정책을 동일선상에서 이렇게 놓고 균형을 이야기하신 것 자체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라는 것으로 완전히 이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처장님께서 여기 오시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국민의 건강·생명·안전, 저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제가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의약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면 그 품질 경쟁력으로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고 이런 인프라 차원에서 산업 경쟁력을 말씀드린 거지 안전을 무시하고 산업을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안전을 가장 중심에 놓고 일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첫 취임을 하셔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식약처장님이 취임 일성으로 대단히 병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산업계를 대변하는 시그널로 읽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가……

이제 처장님은 학계의 1인 학자분도 또 제약사의 어떤 분도 아닌 식의약에 관한, 가장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부처의 책임자라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식약처가 할 일 중의 가장 최우선은 국민의 안전이었고 그 어떤 것과도 동일선상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 점 분명히 새겨 주시고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처장님께 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처장님, 이 보고서 혹시 아시겠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윤소하 위원 우리나라의 약가 수준을 OECD와 비교한 보고서로 2014년 글로벌의약품협회 의 의뢰로…… 거기서 처장님께 의뢰한 겁니다, 그 전에 교수님이셨겠지만.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핵심 내용이, 아까도 그런 지적이 나왔는데 국내 신약의 약가가 OECD 평균의 45%에 불과하다, 구매력평가지표를 적용하더라도 60% 수준으로 현저히 낮다, 이런 이유로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진입을 기피하고 환자 접근성이 제약되고 신약 가치의 하락으로 연구개발 동력이 상실됐다 이런 내용인데, 이 자료를 근거로 말이지요 한국 글로벌의약품협회가 낮은 약가를 이유로 삼아서 건강보험 등재 신청도 안 하면서 우리나라에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익히 알고 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알고 있습니다.

○윤소하 위원 아까 기동민 위원께서 지적하셨어요. 외국의 경우에는 약가를 이중가격으로 매기기도 하고 할인제도 아니면 비밀계약을 통한 가격 인하를 취하는 다양한 산출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또 각 나라의 사회보험제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려운 것이예요.

심평원에서 나와 계십니다마는 2017년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항암제의 경우는 해외 실제 약가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처장님이 발표하신 보고서는 외국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의 가격을 인터넷 검색, 공개된 약가 책자에만 의존해서 공시약가로 설정하고 분석을……

아까 일정 부분 시인을 하시던데 이렇게 발표한 자료, 근거가 미약한 보고서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제가 연구한 자료원은 각 국가별로 공신력이 있는 약가 사이트에서 자료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약가를 결정할 때 외국의 약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참

고하는 그런 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갖고 해서 이 자료원은 근거가 미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윤소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자료원은 공신력 있는 자료원입니다. 그런데 약가를 보정하거나 하는 방법론은 연구자에 따라서 좀 다른 방법론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소하 위원 ‘연구자에 따라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기동민 위원님이 질문할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절대치로 볼 수 없다고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기에…… 약가 인하율이 천차만별이예요. 10·20·30%를 일괄 인하해서 계산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당시 학자로서 자신의 연구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촘촘히 연구해서 한 것이지만 그것이 절대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고요.

여전히 우리나라 신약이 OECD 대비 45%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세요? 제공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그 연구는 2013년의 일부 신약에 대한 결과입니다.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고……

○윤소하 위원 작년 국감에서 보건복지부장관께서 단순 비교·산출이 어렵다고 이미 한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처장님이 의도했던 아니든 한국글로벌의약품협회가 처장님 자료를 근거로 마치 우리나라 시장에 매우 싼 값에 제공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익을 위한 도구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고서가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말씀 하셔야지 않겠어요? 한번 지적을 하시거나 이의 제기를 해 보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협회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원래 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나 많은 나라들이 약가 비교를 통해서 가격을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논란이 적은 방법론을 개발할 것이냐 이런 학술적인 의미에서 시작한 연구입니다. 그 연구 결

과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용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소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윤소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위원 서울 송파병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이의경 식약처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수장으로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처장님께서서는 의약품 분야에서는 굉장히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식약처가 다뤄야 될 일이 의약품만이 아니라 식품이라든지 의료기기, 화장품,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빨리 파악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어쨌든 최근에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남인순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해야 되는 비용도 가게의 부담으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할 때 공산품으로 되어 있는 것과 보건용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데, 지금 저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 2월만 해도 작년에 비해 급가는, 이상 수준으로 허위광고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허위광고의 주요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

○남인순 위원 공산품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허위광고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꼭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한테는 식약처장님께서 공산품 마스크하고 또 보건용 마스크하고 확실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설명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건용 마스크와 공산품 마스크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지도 말씀을 꼭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허위광고라든가 과대광고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 현안질의 끝나고 나면…… 지금 마스크들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보도자료를 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식약처장님께서 그것을 광고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해서 이 부분에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저희 보건 마스크는 KF라는 코리아 필터(Korea Filter)라든지 의약외품 마크가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물을 사먹을 줄 몰랐는데 최근에는 생수를 이미 누구나 다 사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도 아마 사람들이 필요한 상황이 오게 되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난해 11월 1일부터 의약외품으로 관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신청과 허가심사 내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현재 허가받은 제품은 없지만 5개 회사의 5개 제품이 품목허가 심사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가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서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러면 우리도 공기를 사서 마시는 시대가 온다고 봐야 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 아닐까요? 물도 수돗물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남인순 위원 이제 정말 갈수록 미세먼지·초미세먼지로 인해서 국민들의 생활비용의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물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식약처로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에서도 질문이 나왔는데요. 강남의 한 클럽인 버닝썬에서의 소위 ‘물뽕’이라고 하는 그런 최음제나 흥분제 이름의 유사 약물이 온라인상으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남인순 위원 이런 마약류 또 유해약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난 2월 달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차단하는 SNI라고 하는

차단 기술을 통해서 접속 차단을 굉장히 높였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접속 차단 대상 해외 불법 사이트에 불법 식·의약품은 895건 중에서 단 8건으로 1%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SNI라고 하는 차단 기술이 굉장히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른 불법적인 여러 가지를 차단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식약처에 제안을 드릴 텐데요. 방심위가 하고 있는 SNI 접속 차단이 적용되지 않는 기존의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해서 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식약처가. 심사 요청을 해서 불법성 여부를 심의한 후에 방심위에서 SNI 접속 차단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신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래서 그런 방식의 검토를 한번 꼭 해 보시고요.

지금 또 하나 문제는 고발·수사의뢰 건수도 굉장히 낮습니다, 식약처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도 식약처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물론 판매자가 특정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고발초치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적극적인 수사라든가 이런 의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너무 심각합니다, 이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정도로 말씀드리지만 빨리 파악해서 다음에 저희 의원실로 대응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남인순 위원** 그리고 고어사 인공혈관에 대해서는 앞에서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에는 이 고어사에서 그동안 허가 취하한 품목이 이번 인공혈관뿐만이 아니라 48개 품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처장님?

혹시 여기에 다른 희귀·필수 치료재료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독점화된 부분에 계속 저희가 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미리 대처를 안 하고 있으면. 혹시 품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보고받았습니

다.

○**남인순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희귀·필수 치료재료가 얼마나 포함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체품이 존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남인순 위원** 김성주 공단 이사장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남인순 위원** 최근에 어쨌든 수익률에 대한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이 있는데요.

사실 기금운용과 관련해서는 단기 수익률 변동보다는 장기 평균수익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3년 정도의 추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최근 3년 동안에는 2017년에 7.26%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2018년에는 0.92%, 올해는 국내 증시 회복 때문에 상당히 좋아서 현재는 한 4% 안팎 정도의 수익률을 내는 것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올해 상반기를 그렇게 보시면, 이것을 평균적으로 본다면 3년 전의 추이를 계속 유지해 나갈 전망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저희가 목표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약간씩 다릅니다만 보통 평균적으로는 4.5% 플러스마이너스를 보는데요. 그 정도의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상회하는 것으로 지난 한 20여 년 동안의 운용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인순 위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 전략을 잘 세우셔서 국민들이 수익률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한 가지만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올해 국내 코스피 증시가 2월 말 기준으로 한 7.56%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분야의 잠정수익률은 9.45%거든요. 코스피 상승률보다 높게 잘 운용하고 있다고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남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약처장님,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국민들이 미세먼지를 굉장히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의약품 관련해서는 이것은 별도로 중요한 것으로 다뤄 줘야 돼요. 가볍게 부분적으로 터치를 했는데……

이제 당장 야외활동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야외에서의 식품 섭취라든가 부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미세먼지 관련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이라고 막 나오거든요. 지금 식의약품처에서 그런 관리라든가 할 일이 많아요. 저는 오늘 현안에 그게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부분적으로는 터치했는데 그 관리를 종합적으로 해 주세요.

제가 엿그제 어디 야외에 나갔더니 식품 위생 상태가 아주 불량해요. 통을 전부 열어 놓고, 미세먼지 많은 날인데 그것을 원료로 해서 그냥 쓰고 있는데 그 단속도 과거에 하던 것보다 좀 더 한다든가……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세먼지 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당연히 식의약품안전처는 종전에 하던 것보다는 강화된 무엇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국민들이 걱정을 좀 덜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다음은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 위원** 인천 남동갑 출신의 맹성규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늘릴 계획이시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예, 그렇습니다.

○**맹성규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19년 2월 말 현재 3만 7000개 병상입니다. 3만 7000개 병상을 보시면 필요한 인력이 한 2만 4500명 정도거든요. 간호사·간호조무사·병동지원인력·재활지원인력, 그러니까 3만 7000개 병동에 2만 4500명 정도가 필요한데 단순하게 보더라도 10만 병상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간호인력하고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인력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예.

○**맹성규 위원** 그런데 보시면 요양보호사는 17

년 기준으로 약 36만 명이 있는데요, 22년에는 53만 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요양보호사 결원 발생시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요양보호사들이 다 높은 연령대의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고령으로 인한 퇴직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2030년에 약 15만 8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좋은 제도를 구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병원, 환자와 가족들은 상대적으로 간병서비스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요.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진행되지만 간호인력이 수도권·대형 병원으로 쏠리면서 지방·중소 병원의 간호·간병 인력난은 더 심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제는 예상보다 제도가 실행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 특별하게 대책이나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예, 저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인력이 조기에 조달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점에서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간호사를 다시 현직으로 돌리는 노력도 하고 있고 또 간호조무사를 일정 부분 쓰는 그런 문제도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도 논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인력 조달을 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이게 간호인력하고 간호조무사 인력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인력도 흡수, 즉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혜택을 실질적으로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한번 그 계획을 세밀하게 다루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예, 알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식약처장님, 의료용 대마 관련해서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의료목적의 대마에 관한 제한적 취급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알고 있습니다.

○**맹성규 위원** 그런데 의료용 대마는 수입해서

만 사용할 수 있고 국내에서는 제조·판매가 어렵습니다. 맞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맞습니다.

○**맹성규 위원** 그런데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 약을 수령하기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에피디올렉스라는 약은 건강보험이 적용 안 돼서 1년에 한 3600만 원 정도 고가의 부담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 의료용 대마 시장이 약 63조 원인데 저희는 전혀 참여를 못 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방식대로, 지금 저희가 허락한 방식대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 유통하고 판매하게 하고, 그래서 오남용을 방지하고 철저한 관리를 한다면 국내 생산 제품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원래 당초에는 이게 대마이기 때문에 의료용이지만 불법유통,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서 매우 제한적인 범위로 정책을 펼 계획이지만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다음에는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에 대한 국내 유통관리에 대한 문제를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매년 해외 리콜된 제품 중에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현황을 모니터링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료품의 경우에는 세균 감염, 유해물질 검출, 그다음에 화장품은 발암물질, 유해물질 이것도 검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인터넷 판매하고 해외직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가하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소비자원의 모니터링처럼 이것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차장님은 어떠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부분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다음에 고농도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작성한 찾아가는 케어서비스 프로그램 결과를 보면…… 아동과 노인,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등 미

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민감계층에서 올바른 마스크 사용률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차장님, 이것 내용 좀 알고 계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맹성규 위원** 이분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해 보이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알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다음에 제가 지난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차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익명신고 시스템 도입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제가 식약처에서 답을 받아 보니까 4월까지 제도개선을 추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4월까지 확실하게 추진하실 겁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해서 이것은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상의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보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소아용 인공혈관 공급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게 하나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대책 중에 고어 본사를 방문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더 이상 공급을 안 하겠다고 공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설득이 가능하시겠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 국장이 그쪽에 계속 메일을 보내서 긍정적인 반응이 왔고, 우선은 저희들이 급하기 때문에 이번 주 내에 저희, 복지부, 심평원이 같이 참여해서 화상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그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가 온 상태입니다.

○**맹성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사 설득이 가능하시겠느냐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맹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대체재가 없는 필수 의

료기기 공급 중단 문제잖아요. 복안을 가지고 별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아까 김상희 위원님이나 기동민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전반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맹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지금 맹성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아까 잠깐 현안으로 말씀은 하셨는데 이렇게 중요한 인명에 관련된 게 규정이 없어서 못하고 그런 점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미리 점검해서, 정말 이게 공급이 안 되면 직접 인명하고 연관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사전관리나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해야지, 지금 시행규칙이 안 돼서 이게 안 된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에 와서 제일 느끼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 수고 많은데 법규에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행정은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법이 없어도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법에 근거 없어서 못 합니다’…… 법에 근거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그것을 자꾸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자꾸 법 탓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아까 말씀한 대로 실질적으로…… 이것 보고서만 이렇게 해 주셨는데 왜 이런 게 생기고 이것 말고 또 다른 게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사전관리나 공급 부족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확립해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신임 식약처장님께 일단은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는 이유 중의 하나는, 3일 전만 해도 약학대학의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 식약처장으로 보임을 받고 3일 만에 이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것은 좀 국민을 기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민의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활동하신 분야가 여러 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사외이사를 맡은 기업이 여러 가지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그런 적발된 곳이었는데 마치 거수기 수준의 활동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의 그런 것도 지금 있다는 것을 좀 유의하시고요.

이의경 교수가 국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서 관리체제를, 다 그것을 마땅히 관리할 능력이 있겠나 이런 것도 국민이 갖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업무를 파악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지금 보직하셨던 분야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국민의 대의를 받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순기능에 아주 최대한의 본인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자담배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의경 교수께서 이런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저희 국장님이 보여 주셔서 업무보고 받았습시다.

○**김순례 위원** 하셨지요? 아마 이 질의가 나올 것으로 상상돼서 차장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식약처가 그동안에 이 전자담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혁혁한 노력을 기울인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시기 전에 아이코스 또 액상형 전자담배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분 공개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JUUL이라는 것이 출시될 바로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민을 이 제품 하나로 매우 현혹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온 나라에 다 퍼진 다음에 여기에 어떤 제재나 여기에 맞는 정책을 펴기에는 너무나 요즈음 SNS나 여러 가지 보급되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JUUL이라는 이 담배가 인체에 굉장히 나쁘다 안 나쁘다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아주 슬림하게, 콤팩트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담배를 피는 기구다라고 상상되기 어려울 정도로 숨길 수 있고 아이들에게 만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CDC(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JUUL

로 인해서 미국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흡연율이 무려 78%가 증가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립건강연구센터에 따르면 USB를 연상시키는 이 작은, 아주 콤팩트한 이런 것들이 발각되지 않게 되어 있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무척 인기를 끌고 있다, 이것에 대한 대안 제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저희 의원실에서 이것을 입수해서 점검해보니까 USB와 같은 모양으로 흡연 시 무색무취이고 또 여기에 향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 이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미국 암의학회의 내용은 더 충격적입니다. 전자담배는 고함량의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JUUL에는 니코틴이 마치 들어 있지 않다는 듯이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만연을 우리가 제어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런 내용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FDA는 과연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이것을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FDA가 처음에 JUUL사에게 보낸 공문을 입수하였습니다.

PPT를 보시면, JUUL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호감이 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더 사용하기가 쉽기 때문에 FDA는 청소년에게 왜 인기가 많은지 추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제품의 성분을 포함하여 JUUL사에 마케팅 전략 그리고 제품의 행동 및 정신에 영향력을 미치는 연구자료 또 디자인 등에 대한 사항을 FDA에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2018년 11월 JUUL은 과일 맛과 향을 내는 전자담배의 편의점 판매에 대한 제한을 하고 향후 금지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보내온 바가 있습니다. 그 계획이 발표가 되고 나서 JUUL사가 자발적으로 편의점에 과일맛, 향 등이 첨가된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 좀 아시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전체는 아니고 일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순례 위원** 그렇지요? 납득하기 어려운 3일 동안의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장님께,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가 된 JUUL이 조만간 국내에 출시가 된다고 합

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수입 제품으로 올 수 있고, 법제도의 한계를 운운하다가 지난번과 같이 국민들 사이에 이미 번져 나간 다음에 사후약방문으로 하기에는 이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옆에 차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임 처장님께서 이것을 숙지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숨이 차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유는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모두 만연이 됐을 때는 건잡을 수 없는, 이것을 차단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위기의 순간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JUUL의 성분 분석뿐만 아니라 FDA처럼 마케팅의 전략 그다음에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은 무엇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청소년들에게 끼칠 수 있는 위해성을 반드시 임팩트 있게 자료를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많이 설득하고 청소년을 지도·단속하는 학교 쪽이나 또 시민단체나 이런 데 충분히 알릴 것을 제가 권고드리고 싶고요.

현재 식약처가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담배 회사에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공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현행법상 기재부와 보건복지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인데 이게 여러 기구 구조에서, 정부부처에서 속의로 이루어 내야 될 마땅한 숙제가 있습니다. 신임 처장님께서 이것을 극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회 복지위원회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려는 정신적인 자세는 되어 있으니까…… 관련 법령에서 담배사업법이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국회에 지금 현재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국회에서도 돕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처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때 당사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 1분만 쓰겠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재부의 열렬한 반대가 있지만 청소년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가장…… 우리 폐 건강, 기관지 건강 너무 잘 아시잖아요. 사회약학 하셨고 사회약학 범위 내에서의 현실적인, 논문적인 팩트 이

런 것을 가지고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법과 그 이전에라도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신임 처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각오와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을 좀 국민들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보건정책을 했던 사람으로서 금연이 우리나라 건강에, 보건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식약처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굉장히 우선순위를 두고 아주 철저하게 잘 하고 부처 협의도 잘 진행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위원님의 여러 가지 해박한 지식도 제가 참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례 위원** 그래서 국민들에게 실망되지 않도록, 아마 신임 처장님의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수** 김순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혜원 위원님, 아마 보건복지위에서 첫 질의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원 위원** 고맙습니다.

제 질의에 앞서서, 아까 문다혜 씨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김용익 이사장님께 한번 여쭙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이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보면 문다혜 씨가 국외로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들어와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진료를 받은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질의였고 그 자료를 요청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예.

○**손혜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제가 듣기로는 국적을 포기하거나 그리고 영주권을 얻거나 시민권자가 되기 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해외에 상주를 하더라도 들어와서 한 달 치 의료보험료를 내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문다혜 씨가 출국을 한 것이 작년 6월 정도라고 신문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 위원께서 말씀하신, 들어와서 진료를

받은 게 10월입니다. 그러면 그 6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시민권을 받을 수도 없고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연유에 해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공단의 이사장님으로서 주실 말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건강보험 급여의 권한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적이 변동되는 경우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그 두 가지 경우가 아닌 한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그 국민은 우리 국민으로, 내국인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수급권은 정지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실이 되는 게 아니고 정지되는 것이고 귀국을 하게 되면 귀국하는 날 자동 복귀가 됩니다. 정지는 귀국하면서 자동 복귀가 되고 그 때부터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게……

○**손혜원 위원** 있다가 또 나가게 될 경우에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예?

○**손혜원 위원** 귀국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고 다시 나갔다고 했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문제를 삼는 것 아닙니까? 아직 지금 여기 있는가요, 아니면 나갔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지금 문제가 된 부분만 얘기를 하자면 외국에 있다가 귀국했기 때문에 수급권은 복구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문다혜 씨가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할 정황이 있으면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이게 5월이나 6월에서 10월까지의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을 했을 거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확인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손혜원 위원** 영주권을 취득을 했다면 외교부를 통해서 공단으로 연락이 오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그 부분이 자동으로 오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당사자가 영사관에 신고를 해야, 신고제로 신고를 해야 영주권 취득했다는 게 자료 입력이 되게 되어 있어서…… 그 절차는 그렇습니다.

○**손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계속 서로 간에 주장이 있고 또 사실 확인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사장님께 나중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쭙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건강보험법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혜원 위원** 예.

신임 식약처장께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제가 생각했던 의문이기도 한데 시간이 좀 짧아서 이따가 두 번째 질문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라는 이름이 식품과 의약품과 안전이 만나서 이름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 식품과 의약품이 모여졌을까요, 차장님? 먹는 거라서 그랬겠지요? 사람이 입으로 섭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니까 식품과 약품이 같이 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으로 식약처나 식약처 관련되는 상품들, 제품들에 대해서 궁금하고 좀 의아해했던 것들이 우리나라에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식품과 의약품에 관련되는 안전 문제에서 나오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004년에 만두파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만두파동이 쓰레기 무말랭이가 들어갔다고 경찰수사에서 나온 정보로 기사가 되고 나서 만두 업체가 거의 파산 아니면 거의 문을 닫게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지요. 그리고 나서 추후 조사 결과는 업체의 무혐의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리고 두 번째, 치약사건 아시지요? 그것은 2016년 9월입니다. 치약에—그때 당시 가슴기살균제 얘기가 난리가 났을 때입니다—가슴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라는 그런 무책임한 발표로 인해서 그 브랜드 자체가 사라질 정도로 큰 타격을 입고 그리고 나서 세 달 뒤에 안전기준이나 위해 수준보다 낮은 극미량이고 외국보다는 더 낮은 양이다…… 그러면 그 기업이나 그 브랜드가 입은 상처랑 불이익은, 그 손해는 누가 감당합니까?

지금 차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차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누가 책임 집니까? 국회입니까, 그것을 제기한 국회의원이입

니까, 아니면 시민단체들입니까, 아니면 언론입니까, 아니면 식약처입니까?

국민들 모두가, 사회를 불안에 떨게 하는 그 사건이 주는 위해에 대해서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한번 대답을 해 주시고 제가 이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서 다시 이어 가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정부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국민 건강·안전·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혜원 위원** 제가 2차 질의 때 다시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오제세 위원** 심평원장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예.

○**오제세 위원** 같은 항암제인데도 불구하고 보험급여 등재 여부에 따라서 약값이 20배가 차이가 나서 그야말로 돈이 없으면 죽어야 된다,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시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예.

○**오제세 위원** 예를 들면 라핀나캡슐 또 매큐셀정 같은 것은 급여로 할 경우에는 50만 원인데 급여로 안 할 경우에는 10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켈코리캡슐도 급여로 할 때는 33만 원인데 급여로 하지 않을 때는 660만 원이 되고요. 퍼제타주도 이것은 급여로 할 때는 110만 원이고 비급여로 할 때는 390만 원으로 이렇게 돼서 급여와 비급여에 따라서 20배 내지는 3배씩 차이가 나게 되고 있고요.

항암제에 대한 재정지출을 보면 OECD는 약제비 총지출 중에서 항암제 비율이 약 19%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3분의 1밖에 안 되는 6%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보재정이 항암제에 대해서 좀 더 재정을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예, 동의합니다.

○**오제세 위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조속히 급여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약이 그 질환에 정말 효과적인가에 대

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꼭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검증이 되고 그러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제세 위원** 하여튼 OECD 사례에 비추어도 OECD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항암제에 대해서 급여화하지 않고 있다 하는 점이 그 방향을 설정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요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그런 의료기기에 대해서 요양급여 등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의료기기의 허가·평가 신청, 결정을 원스톱으로 하겠다, 허가·평가 정보를 연계해서 구축하겠다고, 작년 6월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체외진단검사 분야도 선진입·후평가로 제도를 전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빨리 하지 않아서…… 그야말로 우리 업계에서 새로운 의료기기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 놓고도 우리 정부의 능력 처리, 발목잡기로 인해서 시판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요청하신 다음에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또 식약처 이렇게 같이 의논해서 빠른 트랙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제세 위원** 아니, 이것 대통령이 언급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게 장관이나 처장이나 실무자들이 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 것까지 대통령이 언급하도록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물며 대통령이 언급을 하셨으면 신속하게 하셔야지 부지하세월로 그냥 끝면 대통령이 얘기하신 게 도대체가 뭐가 됩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감염 체외진단 기기는 올해는……

**○오제세 위원** 아니, 올해가 아니라…… 올해라는 게 보통 긴 얘기입니까? 이게 참 며칠 만에, 한 달 안에 이렇게 해야 뭐가 일이 되는 것이지. 뭐 얘기 낱습니까? 조속히 하세요. 업무보고에 18년 6월 달에 하겠다, 일원화하겠다 해 놓고 지금 벌써 얼마 된 겁니까? 이게 지금 8개월이나 지났는데, 9개월째인데 아홉 달 동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일을 그냥 부지하세월로 하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의료기기산업이 발전하겠습니까?

식약처장님, FDA에서 프리서티피케이션(pre-certification)이라 그래 가지고 디지털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액션플랜을 발표했는데요. 소프트웨어 제조사 중에서 인증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 면제 또는 자료제출을 간소화하겠다 이런 것을 발표한 것 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오제세 위원** FDA는 이렇게 합니다. 삼성도 여기 들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식약처에 이런 제도에 대해서 질 의했더니 우리 식약처는 뭐라 하느냐 하면 의료기기 심사부의 심사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34명밖에 안 돼서 못 하겠다, 지금 이런 식이에요. NECA든지 식약처든지 사람이 없고 전문성이 부족해 가지고 심사를 못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정부가 기업을 살리겠다는 겁니까, 망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와 보니까 인력과 예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한테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가 조속히 환자들한테 접근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해서 식약처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애쓰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애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제세 위원** 이런 일들로 정부의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지금 연금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공단도 자산 600조씩 운용하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마이너스 6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NECA도 마찬가지예요, 식약처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인력을 해 가지고 산업과 국민경제를 발전시켜야지 사람 없다 그래 가지고 일 안 하고 앉아 있으면 도대체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명수** 오제세 위원님, 마치신 겁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규 위원** 식약처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18년 7월 달에 리피오돌 사태가 일어났을 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고 독점적인 제약

회사나 의료기기의 환자 공급 중단 사태에 대한 대비를 해 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년이 안 돼서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왜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이런 사건이 2009년 한국노바티스의 글리벡 사건에서 일어났고요. 2011년 올림푸스에 의한 내시경칼도 공급 중단 사태가 일어났고요.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의 FDA는 뭐 하는 기관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기에서 아까 지적하신 글에 보면 폰탄수술에 관련되는 인공 제품을 수요가 적어 가지고 낮은 보험수가 때문에 그쪽에서 스스로가 철수한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대만 같은 나라는 우리보다 인구도 반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실제로 공급해 가지고 우리가 우회적으로 대만을 통해서 이것을 공급받으려고 했을 때 그쪽이 거절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대학병원에서, 그중에서 흉부외과에서 이미 나라에서 이럴 줄 알고 일찍이 인공혈관을 사전에 주문을 해 놔 가지고 그 2년을 버틴 것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 가지고 국가에서는 2년 동안에 별문제 없었다는 듯이 이제…… 그것도 아주 굴욕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관 세 군데가 지금 미국까지 가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될 일이 벌어졌는데, 글리벡만 하더라도 가격의 3.6배 가까이 높은 돈을 주었고 실제로 미국은 80만 원 가까이 되고 중국은 14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우리는 37만 원인가 4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을…… 너무 낮으니까 결국은 그쪽에서 철수한 것 아닙니까?

그런 협상이나 또는 필요성이나…… 또 전문적으로 학회에서 요구할 때 그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국가가 준비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와 가지고 행정적 처리는 별문제 없으니까 협상하면 된다는 말로 오늘 여기 와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기는 그냥 관료주의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전문성이 너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게끔 만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태에 대해서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향후 이 사태에 대해서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난번 리피오돌 사태 때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한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두 번이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간단한 재료가 아닙니다. 이것 수술 못 합니다. 알잖아요. 기록은 잘해 놓았지만요. 폰탄수술 할 때는, 우회수술 할 때 절대 이 혈관 안 쓰면 안 된다…… 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린 애들. 그런 수술을 국가가 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 보세요. 그쪽에서 37만 원 하다가 지금 얼마 달라고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돈 달라고 할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국의 FDA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갈 길이 바빠서 다른 것부터 질문해 가면서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아까 지적을 한 것 중에 하나가, 계란 사태 아시지요? 저는 그 협상에 두 번이나 참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세척·살균 등 위생적으로 처리하면서 선별포장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게 핵심이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세척·살균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콜드체인입니다. 언급이 없잖아요. 식약처에서 이 내용을 정말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를 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콜드체인이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이 계란을 유통할 때 적어도 5℃ 이하로 합니다. 전 세계에서 15℃ 이하로 하는 것이 주요 나라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당시 두 가지 사건, 하나는 농약 문제이고 하나는 살모넬라 감염 아닙니까? 살모넬라 감염을 방지하려 그러면 적어도 10℃ 이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통과정에서 관리가, 콜드체인이 가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로 등장해야 국민들이…… 아까 말한 대로 산란 날짜 찍는 것보다는 유통과정에서 저온으로 냉장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통해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 그동안의 갈등을 뭘로 커버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별포장 적용 대상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가지고 그 당시 그 파동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은 정상적인 키를 알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태스크포스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담당하시는 책임자분이 오늘 처음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계란은 다소비 식품으로 매우 중요한 것 동의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새겨서 엄격한 관리체계……

○윤일규 위원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지요. 국민들의 중요한 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정확하고 명확하고 그래야 앞으로 해결 방법이 나온다는 거지요. 이것대로 하면 해결 방법이 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제가 조금 보충……

○윤일규 위원 예를 들자면 하루에 4000만 개가 생산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말한 대로 선별포장한다고 그러면 선별포장하는, GP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그 문제는 그러면……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그래서 지난번에 양계협회 또 소비자단체, 농림부 등과 해서 TF를 3월 5일 자로 구성을 했고요. 그것을 충분히 논의해서 수급대책이라든지 아까 콜드체인 시스템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일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콜드체인 시스템이 반드시 언급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윤일규 위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11페이지 기록을 보고,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을 보고 설명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자료는 다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참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정부에서 책임 있는, 그래야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사실 쟁점이 되는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살모넬라 때문에 식중독이 한번 일어났고, 빵에서 식품 중독이 일어났지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자기들은 뭐냐 하면 산란일자를 찍어 달라 했는데 농가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했고, 사실 산란일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한 식품인가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였습니다.

실제로 산란일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냉장유통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 사실 핵심이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 기록에 콜드체인이라는 언급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야기가? 그래야 지금 여기서 아시다시피, 지적하다시피 계란 문제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일 쟁점이 됐던 게 그 사건 아닙니까?

저도 1분 더 주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갖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설득할 수 없잖아요, 지금. 내 말은 그것을 정부에서 분명한 방침과 기록을 해 줘야 저희들이 알릴 것 아닙니까? 제 말은 그 겁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심사평가원 문제는, 이번에 심사평가원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핵심이 뭐냐 하면 전문가에 의해서 심사평가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예.

○윤일규 위원 그래서 1차로 PRC 시스템 하고 그다음에 2차로 SRC 시스템을 하지 않습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예.

○윤일규 위원 그것보다 단계가 더 높은 전문가들이 참석하면서 단계를 높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하는 TRC 시스템에 가면 갑자기 비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평가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국가심사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비전문가들의 의견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복하게 되면 전문가의 의견이 의미가 없고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로 쟁점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 것을 안 하려고 전문가 시스템을 통해서 보다 정확하게 하고자 했는데 왜 TRC 시스템을 더 강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저희가 전문가심사는 PRC하고 SRC에서 다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TRC는 우리나라 심사제도의 운영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 논의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윤일규 위원 그렇지만 그게 최고기구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문가들이 만든 관정에 대해서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시스템이란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시스템 자체의, 예를 들

자면 전문가의 권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똑같이 사회적인 영향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로 심사제도의 권위가 없어진다는 거지요, 내 말은. 그러면 투웨이 시스템은 양쪽, 다른 방향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심사 시스템을 변하게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이것을 갖고 상위기구를 하게 되면 아까 말한 전문가의 원래의 목적하고 다른 방향으로 마찬가지로 돌아간다는 거지요, 제 이야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윤일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것은 어떤 상위의 시스템이 아니라 투 트랙으로 가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의료계와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일규 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저도 국가 전문기관에 있었지만 전문가는 전문가의 권위로써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증거가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윤일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반갑습니다.

장정숙 위원입니다.

처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최근에 매일 나오는 뉴스 중에서 제일 핫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강남 유명 클럽 사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클럽에서 불법마약류가 공공연하게 유통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요? 심지어는 성범죄에도 악용되었다는 의혹이 굉장히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제가 되니까 식약처를 비롯해서 검찰, 경찰 등 9개 부처가 합동으로 불법마약류 범정부 차원 강력 대응책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처장님, 식약처 대책이 이번과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강력 대응책이라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짧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장정숙 위원**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에서 오늘 발표한 업무보고 25쪽을 보니

까 3월에서 4월까지 불법마약류 유통 인터넷·SNS 집중점검 두 달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된 GHB, 일명 ‘물뽕’ 알고 계시지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

○**장정숙 위원** 2001년에 지정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심지어 MBC에서는 뉴스데스크에서 1998년 11월 11일 날, 그러니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기 2년 전에 이 물뽕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됐는데 이 마약은 먹기도 편하고 값도 싼 편이어서 확대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하고 벌써 뉴스에 나왔다니깐요. 그런데 2년 뒤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근 19년 동안 암암리에 유통이 되던 이 물뽕이 2개월 집중단속으로 강력 대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나, 본 위원은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화면 봐 주십시오.

2007년 당시 식약청이 인터넷 마약·의약품 불법판매를 근절하겠다고면서 발표한 대책입니다. 경찰청, 관세청, 정통위, 포털 사이트와 전방위 공조체계 구축하겠다……

그런데 처장님, 얼마 전에 나왔지요. 3월 5일 날 식약처 대책 어떻습니까? 여기에다가 몇 개 부처만 갖다 붙여요. 또 몇 개 사이트 확대에 불과합니다. 10여 년 전과 판박이 대책이라니까요. 식약처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10년 넘게 똑같은 대책, 졸속 대책만 거듭 발표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본 위원이 이번 사태는 이전까지의 불법마약류 단속하고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 지금까지 마약류 단속에 초점에 맞춰진 것은, 화면 보십시오. 불법유통으로 마약을 구입해요. 그래서 구매자 본인이 투약해서 중독까지 이어지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의 핵심은 약물을 구매합니다. 구매한 사람이 약물을 또 사용해요. 거기다가 성폭행이라는 2차 범죄가 일어난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GHB, 물뽕이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이 라목에 해당이 되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

○**장정숙 위원** 가목부터 다목까지는 약물보다도 어떻습니까? 오남용 위험성 또 신체 위해도가 낮다 이렇게 여겨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라는 중범죄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막상 식약처에서는 이번에도 그냥 똑같은 대책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까 ‘예’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 대한 고민도 없어요. 그냥 식약처는 해 오던 대로…… 식약처가 ‘2차 범죄에 이용하는 불법마약류 유통’ 이래 가지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식약처가 이렇게 10여 년 동안 미흡한 대책으로 일관하는 동안에 약물 성범죄 피해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도표 보십시오.

2018년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만 성범죄 관련 약물 감정을 요청한 건수가 861건이나 됩니다. 5년 새 135%나 증가했습니다.

처장님, 본 위원은 식약처가 데이트 강간 약물로 인한 2차 범죄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성범죄에 악용되었던 약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악용될 수 있는 약물들도 있을 겁니다. 전문가시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식약처가 제발 전문성을 토대로 데이트 강간 약물로 지정하고 특별 관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장정숙 위원** 그래서 과거에는 인터넷 포털, 플랫폼 중심으로 마약류가 불법유통되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SNS를 통한 점조직 형태로 판매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방점을 찍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점조직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식약처 대책처럼 포털, 플랫폼 ID 차단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SNS를 통한 판매를 상시 단속하셔야 됩니다. 상시 단속입니다.

특히나 GHB 같은 경우는 제조가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

○**장정숙 위원** 제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료용 유통보다는 유통 단속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강조하고 싶고요.

과거에 가짜 비아그라 기억나시지요? 가짜 비아그라 당시에 중조단 특수조사팀이 활약한 사례 있지 않습니까?

중조단, 뭘지 알고 계시지요?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그 특수조사팀이 SNS 판매 철저히 단속하고 데이트 강간 약물 유통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제발 나서 주십시오. 그래서 관계부처도 설득하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장정숙 위원** 새로운 의지를 갖고 취임하셨으니까 처장님, 본 위원이 믿어도 되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 예,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불법마약류 유통과 이에 따른 2차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데이트 강간 약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장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늘 처음 오셔서 고생하셨는데 가정에 다른 일이 있어서 아마 이 자리를 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차장이 계시니까 차장께서 계속 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잘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 이어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처장께 질의할 것이 대부분인데 자리를 뜨니까 질의할 내용이 답답하네요, 당사자가 없어서.

우선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해도 요구해도 안 와요.

차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김광수 위원** 이의경 처장이 성균관대 교수 시절에 작년에 글로벌의약산업협회에서 연구용역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의뢰해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나왔는지, 연구용역 비용이 얼마인지 어려

운 일이 아닌데 안 줘요. 빨리 주십시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일부는 제가 알기로는 전에 게시던 보건사회연구원이나 또 학교에 공문을 요청해 놓은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일단 자료를 빨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경 처장이……

지난번에 글로벌의약품협회 아비 벤쇼산 이분이 작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이분이 대체할 수 없는 약을 인질로 악질적인 약가협상을 하고 있는 분인데,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께서 아마 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국내 신약 가격이 OECD 평균의 45%, 어디서 나온 말이냐’, ‘이의경 교수의 논문에서 근거로 삼은 것이다’ 그랬어요. 어쨌든 이의경 교수가 연구논문에 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나라 약가가 외국 약가의 45% 다 이것만 지금 기정사실화돼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심평원에서 고려대 최상은 교수에게 의뢰해서 실시한 ‘제 외국과의 약가수준 비교 평가 및 지침 개발 연구’ 여기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 합니다. 항암제 등 해외 실제 약가 파악이 어려워서 국내 구매력지수를 고려하면 오히려 우리나라 약가가 더 높다는 상반된 결과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신약 약가가 OECD 평균의 4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진원지가 이의경 교수예요. 지금 식약처장으로서 적절한지 심각하게 의문이 듭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식약처장이고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생각해야 될 식약처장이 어찌 보면 다국적 제약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꼴이 되어 버린 셈이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려고 했는데 나왔어요.

알고 있습니다. 모친상이라고 하시니까 뭐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런데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국글로벌의약품협회에서 의뢰를 받아서 별도의 리서치를 진행했던 그 연구용역 비용이 얼마인지,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 나온 것에 대한 결과보고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챙겨 보겠

습니다.

○**김광수 위원** 만약에 글로벌의약품협회 쪽에 유리한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하셨다라고 하면 처장으로서 자격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 자료를 빨리 보내 주시고, 어쨌든 이의경 교수 시절에 국내가 해외 평균의 45%다 이것이 기정사실화돼서 이게 지금 약가협상에 아주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까지 다 포함시켜 버려 가지고 시간이 많이 없어서 버렸네요. 조금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GMO와 관련해서 누차 제가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GMO 식품표시제를 강화하겠다’, ‘학교급식에서 GMO를 퇴출시키겠다’ 이게 공약이에요.

그런데 GMO 감자가 곧 수입될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작년 5월 15일 날 8차 심의위원회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냈고 관련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GMO 감자가 수입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사실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그것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개발사에서 나간 분이 문제제기를 해서 관련 자료를 저희들이 추가로 전부 제출 요구를 했고 그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히 안전성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8차 심의위에서 났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아닙니다. 추가로 문제제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한 상태고 그것을 일부 제출한 것도 있고 아직 안 온 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심사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식약처는 결국은 GMO 감자 수입을 허락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아닙니다. 확정된 것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확정된 것이 없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언젠가는 확정을 하시겠

다 그렇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그 심사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철저히 해서……

대통령의 철학과 완전히 배치되는 일이에요. 오히려 대통령의 철학과는 반대로, 지금 규제를 강화하지는 못할망정 규제를 풀어 주는 꼴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GMO 완전표시제 관련 주장들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쨌든 이게 수입되면 거의 맥도날드나 롯데리아나 이런 데서 우리 아이들이 GMO 감자를 그냥 편하게, 다 그대로 아무 의심 없이, 이게 GMO 식품인지 뭔지도 모르고 먹을 상황까지 와 버렸는데 GMO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 허용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GMO 감자 수입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식약처에서 잘 처리하셔야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자료제출이 지금 일부 온 것도 있고 안 온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전부 저희들이 받아서 국민건강 이런 안전 차원에서 철저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처장과 직접 관련된 사항인데 본의 아니게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좀 제한을 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식약처 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 국감에서 후발업체의 의료기기 임상을 면제하는 식약처 규정이 공정하지 않다는 점 질의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윤종필 위원** 당시 전임 처장이 모순점이 있다

며 이 제도가 사회적으로 정당하지 않음을 인정했습니다.

선행기업은 막대한 투자와 노력으로 임상시험을 통과해서 어렵게 허가를 받았고 후발기업은 임상시험도 없이 손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공정하지……

○**윤종필 위원** 불가능하겠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종필 위원** 그런데 대책 마련하겠다고 식약처는 개선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임상도 하지 않은 카피 제품을 우후죽순으로 지금도 인허가 내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저희들이 계속 그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지적 주셔서 같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종필 위원** 본 위원이 작년뿐 아니라 2017년 국감에서도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했지만 식약처는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게다가 선행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임 처장도 퇴임했고 담당 국·과장들도 다른 부서로 다 옮겼더라고요. 사실상 이게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도 주지 않고 사람들 다 없어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그것은 정기인사로 한 것이고요, 후임자가 그것을 인계받아서 지금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종필 위원** 문제는 이렇게 식약처가 느장 대응하는 동안에 선행업체는 파산 위기에 내몰린다는 겁니다. 이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어느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임상시험을 거쳐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윤종필 위원** 지금 규정이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매우 불공정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2월 28일 날 새로 오신 담당 국장, 과장, 실무진 그리고 의료기기 업계 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당시 본 위원이 안일하게 대처해 온 식약처의 모습과 업계 분들의 눈물어린 호소를 한자리에서 다 봤습니다. 왜 한 번이라도 업계의 목소리를 들어 주지 않았느냐는 이 물음에 식약처는 대답 못 했습니다.

양진영 국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 양진영** 예.  
 ○**윤종필 위원** 국장님도 그때 금방 바뀌어 가지고 일주일도 안 된 상태였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사안을 정확하게 신임 처장님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안전국장 양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차장님도 꼭 숙지하고 같이 해결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챙겨 보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받고 개선방안 만들어서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식약처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지 모니터링하며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알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다음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윤종필 위원** 이사장님, 본 위원이 2018년 국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함에 있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저도 동감했습니다.  
 ○**윤종필 위원** 지난 1월 공단은 구체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점관리 사항과 예상 못한 우려라는 이런 의심스런 기준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고 기금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이사장님, 맞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그렇게 정했습니다.  
 ○**윤종필 위원** 중점관리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배당 성향, 횡령·배임 같은 불법행위, 사회적 논란·이슈를 평가해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윤종필 위원** 이사장님,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개입이 우려되는 평가기준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어지는데요. 과연 이 가이드라인이 공단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본 위원은 오히려 자유시장경제에 역행하는 기업 통제용 지침서처럼 보여지는데 이사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위원님,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였고요.  
 ○**윤종필 위원** 이사장님, 제가 질의 다 하고 한꺼번에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단이 저배당 관리기업 리스트를 마치 블랙리스트인마냥 공개해서 기업을 압박하고 배당 확대를 강요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윤종필 위원** 블랙리스트 공개가 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하고 계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여러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윤종필 위원** 배당 성향을 높이게 되면 단기 이익은 증가하겠지요. 그렇지만 결국 대주주의 배만 부르게 될 것입니다. 기업은 운영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해서 투자를 위축하게 될 것이고 결국 미래 일자리는 감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은 발목이 잡힐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님 견해도 말씀해 주시고요.  
 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 총 296개이고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94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배당 성향이나 예상치 못한 우려, 사회적 논란을 기준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경영에 개입한다면 정부 이념에 따라 칼을 휘두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윤종필 위원** 그것도 이따 답변 주시고.  
 지난 연말 기준 국민연금이 2008년 IMF 경제위기 이후 최초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윤종필 위원** 기금운용하는 청지기가 주인 뜻에 따르지 않고 자유시장경제를 훼손한 결과로 보여지는데, 이제라도 국민연금을 주인인 국민의 손에 돌려드려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

는지요? 한꺼번에 답해 주시고.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기업 운영에 개입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연금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혁해서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 연금공단과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사장님, 공단에서는 시장원리를 적극 보장하며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대책 마련하시고 이 방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종필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세간에 있는 우려를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수탁해서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국민들의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예방적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응당히 할 수 있는 주주로서의 권한을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한.....

○윤종필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지침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향후에.....

○윤종필 위원 아니, 기업 통제용 지침서처럼 보인다고, 이사장님 견해는 어떠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또 중요한 주주권이나 의결권 행사는 민간인들로 전원 구성되어 있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 가능성은 하나도 없다 말씀드립니다.

○윤종필 위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기업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틈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거기에도 재계의 추천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종필 위원 대부분이 대학교수이고 정부기관 연구위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업 목소리를 넣을 수 있는 방안 한번 마련해 주시고요.

또 블랙리스트 공개가 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하고 계셨다 그랬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기업의 요구와 우려는 이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기업 측 추천 위원이 참여하고 있고요, 기금운용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렴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배당 관련된 중점관리 기업들이 기업의 블랙리스트는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꾸준히 공개·비공개 대화를 통해서 주주로서 당연한 권리를 요구한 것에 대해 잘 응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공개적인 관리를 통해서 수익성을 제고하자는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필 위원 중요한 것은 블랙리스트에 있던 현대그린푸드사의 경우는 지난 2월에 배당금을 190% 인상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윤종필 위원 공단은 회사 배당 확대 의지를 고려해서 리스트에서 제외했고 리스트에 있던 기업 두 곳은 공개되기 전 배당금을 인상해서 빼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블랙리스트와 다름없다라는 거고 배당 성향이나 예상치 못한 우려, 사회적 논란을 기준으로 이 경영에 개입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개입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서는 연금을 주인한테 좀 돌려 가지고 국민 편에서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위원님, 상세한 내용은 제가 문서로 또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야말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주주권 행사하기로 한 것은 국민들에게 그 이익을 돌려주기 위한 것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윤종필 위원 근본 그것은 맞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렇지 않습니다.

○윤종필 위원 상세한 건 나중에 말씀 주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배당이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들의 기금 자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지만, 다만 기업

에 무리한 배당 요구를 했을 경우에 기업의 가치와 장기적 이익을 훼손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는 절대로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명수 윤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명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연 위원 식약처 차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김명연 위원 식용란들, 계란 산란일자 표기하는 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김명연 위원 어때요? 그게 안전하게 다 정착이 될 것 같아요, 그 제도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저희들이 6개월 계도기간을 두었고요.

○김명연 위원 되겠느냐고요, 안 되겠느냐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저는 그게 시간을 갖고 하면 된다고 보는데, 다만 보완책들이 있는지 지금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김명연 위원 아니, 되겠다고 낙관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산란계농장에서 이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마크를. 그렇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농장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김명연 위원 GP센터가 하는데 GP센터로 갈 수 있는 농장이 있고 거기의 범위에 벗어난 농장들, 영세한 농장들 거기가 문제라는 얘기에요. 그것은 대책이 없잖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그래서 지금 농림부 그다음에 양계 관련 단체……

○김명연 위원 60억 편성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TF를 3월 5일 날 구성을 했었고요. 거기서 전반적으로 보완할 점이라든지 개선할 점들을 저희들이 논의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김명연 위원 6개월 유예해 놓고 이제 TF 결성했는데 그 TF가 언제 대책을 만들어서, 그 대책이 농가에 전달이 돼서 농가가 그 시설을 완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야지 마크가 돼서 나오는 거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60억 편성을 해 놨다고 하

는데 그게 저리로 용자를 해 주는 건데 용자도 담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용자를 해주지 담보력 없는 농가에, 영세 농가에 그냥 주겠어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미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그 이상 훨씬, 절반도 집행을 못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지금 6개월 동안에 할 수 있느냐, 나는 그게 걱정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제가 조금 말씀을……

○김명연 위원 두 번째, 차장님이 슈퍼에 장 보러 갔는데 산란일자 쪽 써 놓지요. 슈퍼에서 알이 다 떨어지면 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정 수준의 재고가 있을 때 시켜서 갖고 오지요. 그러면 선입선출할 것 아니에요, 있던 재고 앞에 다 놓고 오늘 갖고 온 것 뒤에다 놓고. 그런데 사러 가는 사람들은 뒤에서 꺼내지 앞에서 꺼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그것은 다른 우유도 마찬가지고 전부 소비자들이……

○김명연 위원 그렇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그렇습니다.

○김명연 위원 그러나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공장 생산일자 이런 것은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식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 알은, 계란은 산란일에서 일주일만 지나고 열흘만 지나도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요. 그런데 실제 이 계란이 실온에서 유통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채워집니까? 얼마예요, 차장님?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보통 유통기한은 45일까지 찍는데……

○김명연 위원 45일이면 한 달 전에 낳은 것, 오늘이 3월 13일인데 ‘2월 13일’ 이렇게 마크된 것 사다 잡수시겠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그것은……

○김명연 위원 현장에서의 그런 어려움들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들었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TF에서 충분히 논의할 걸로 되어 있고 산란일자는 6개월이지만 GP센터 관련해서는 1년간 계도기간을 주기로 관련 농림부라든지……

○김명연 위원 6개월에 답이 안 나오는 게 1년 있으면 답이 나오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아니요,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명연 위원** 논의만 하면 뭐 해요, 논의만? 지금까지 그 논의를 안 해 갖고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면 수입 계란 이것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기본적으로 수입 계란도 산란일자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연 위원** 되어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김명연 위원** 가공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표시는 전부, 지금 산란일자는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김명연 위원** 식당용하고 가공용하고 수입용은 표시는 안 되어 있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아닙니다. 표시는 전부 되도록 되어 있고요.

○**김명연 위원** 확실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김명연 위원** 지금 내가 여기가 농림위원회가 아닌데도 자꾸 이 산란농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국내 생산기반을 이렇게 자꾸 흔들려 갖고 어렵게 만들면 결국 우리 국민들은 수입에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비펜트린 사건이 터졌을 때 누가 손해 봤습니까? 농가가 손해 봤지요? 국민들은 그 기간 안 드신 것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닌데 생산농가는 손해를 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도나고 망한 데가 많아요. 그래 갖고 이미 우리 총생산량, 생산농가가 줄었어요. 그것만큼 어디에 의존을 해야 돼요? 그것만큼 수입하는 겁니다. 100% 자급을 못 하면 부족한 것만큼 계속 수입을 해 와야 돼요.

우리가 축산물을 생산 단계하고 가공, 유통, 식탁 이걸 농림부하고 식약처하고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괴리가 생겨 갖고 자꾸 우리 생산농가들을 갖다가 위축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걸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경제적인 수준, 여력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지요. 망하면 그것만큼 생산량이 줄면 우리 국민들은 수입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수입 생산품들 우리가 특별하게 관리하는 한다 하지만 계란 같은 게 그렇게 관리가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농림부에서 TF 만들었다고 그래서 뒷집지고 계시지 말고 결국은 마크에서부터 유통, 식탁까지는 이게 문제가 되면 항상 우리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보기에 지금 구성해서 60억 편성해서 그것 갖다 써라, 2~3%로 주겠다 이렇게 던져 놓고 그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알겠습니다.

○**김명연 위원** 김성주 이사장님.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김명연 위원** 국민연금공단의 인력,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때 채용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문에 최근에……

○**김명연 위원** 아니,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수익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연 위원** 인력이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아, 인력이요.

인력은 저희가 매년 두 차례에 나눠서 한 30여 명씩 계속 채용하고 있고 지금도 채용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연 위원** 작년에 부족한 만큼 뽑았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김명연 위원** 그런데 그만큼 나갔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저희가 나간 만큼 뽑은 게 아니고요. 저희는 원래 인력을 늘리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김명연 위원** 아니, 부족한 만큼 충원을 했는데 그 사이에 또 나갔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뽑은 것만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보통 운용업계의 인력 이동이 평균 10%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평균 수준에서 들고 나가는 것이지, 나갔기 때문에 뽑은 게 아니고 저희는 원래 뽑을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 와중에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나가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명연 위원** 제가 보기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인사관리에 대해서 무척 무책임한 답

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100%…… 아니, 지금같이 취직하기 힘든 세상에 이 회사에서, 여기서 사람을 다 채우지 못하고 10%가 들락날락한다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편화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시면……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운용업계 전체가 10% 안팎 이동하고 있고요. 저희 공단의 일반직은 퇴사한 직원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정규직이고 정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고 퇴사 않지만 운용직들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김명연 위원 작년에 내가 지적했을 때 당시 240명인데 38명, 그 후에 뽑았어요. 그런데 현재도 280명이예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계속 저희는 매년 뽑습니다, 몇십 명씩.

○김명연 위원 그 이상을 더 채워야지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조건의 회사가 10%가 넘어요? 38명 뽑았는데도 지금 빠져 있으니까,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위원님, 조건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저희가……

○김명연 위원 아니, 그러면 조건이 안 좋아요, 이 회사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시장 평균보다도 처우가 낮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조건이 좋다고 말씀하시면 조금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김명연 위원 그러면 조건이 안 좋아 갖고 이것 못 채우는 거예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올해도 1월 달에 채용에 들어갔는데 이미……

○김명연 위원 이사장님, 우선 조직의 수장은 조직 운영인력을 채우는 게 기본입니다. 그다음에 그 조직의 기금운용에 맞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저희 채용 경쟁률이 네다섯 배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일정 경력 이상의 질 높은 인력만 채용하기 때문에 응모했다고 해서 다 뽑는 건 아닙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인력을 뽑는 거지요.

○김명연 위원 기금운용본부 같은 경우에 지금 팀장급이 빠져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작년 7월부터 공석이에요. 이걸 어떻게…… 본부장 아니라 책임 아니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실장급으로 승진할 사람들은 승진했고요. 또 새로 채용했고요. 저희가 운용하는 데 특별하게 인력상 어려움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명연 위원 주식운용실의 위탁투자팀장 없지요? 뉴욕사무소장 있어요? 작년 7월부터 공석이에요, 작년 7월부터. 지금 해외투자 하고 있는데 뉴욕사무소장이 7월부터 공석이에요.

지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께서 스텝어드십 코드 적용이라든지 아니면 대외 홍보라든지 수익률에 대한 홍보 이런 건 엄청 열중히 하시는데, 지금 해외투자 하면서 적자가 펄펄 나고 있는데 적자 내면서 이렇게 중요한 부서의 사람들이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비어 있는데 그냥 그 자리도 들어왔다가 누가 나간 것처럼…… 일반 운용직들이 아니라 팀장급에서, 사무소장, 팀장 이런 분들, 운용전략실의 주주권행사팀장 이런 분들도 3개월째…… 적자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이걸 들여다보고 내실을 좀 기하세요. 거기에 집중을 하시라고. 제가 보기에는 정치하고 계시는 것 같아.

기금 수익도 지금 엉망인데 나름대로 괜찮다고 설명회 2월 28일 날인가 했지요? 투자손실 설명회에서 본부장이, 이것 설명회를 하는데 0.92% 마이너스 수익률 했으면서도 당당하게 막 그런 거 하고 앉아 있고. 이렇게 중요한, 운용하는 조직이 안 돌아가고 있는데 뭘 수익이 되겠어요? 관심은 정반대로 다른 데 있고.

국민들은 국민연금에다 뭘 지금 원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이것 지금 내면 나중에 탈 수 있을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제가 가는 데마다 그런 질문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 불안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명연 위원 조장이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저희가 2017년도에는 7.26%의 수익률 냈고 41조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0.92%의 마이너스 수익률에 약 6조 원 정도의 손실을 입었는데……

○김명연 위원 3년 평균이 얼마입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현재 2월 시점에 저희가 한 4%대 수익률 그다음에 한 27조 원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데 좋은 성과를 거둘 때는 관심을 안 가지고 약간 실적이 나났을 때만 집중적으로 그 문제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겁니다.

○**김명연 위원** 실적이 안 좋을 때 당연히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고 그래야 되는 거지요. 그것을 갖다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 국민은 10년이면 10년 내내 이익을 내 줘야지 안심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께서는. 그것이 임무 아닙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런데 어느 나라 연기금도 매년 그렇게 일정한 수익률을 계속 올릴 수는 없습니다. 어쩔 때는 좋고 어쩔 때는 나빠서……

○**김명연 위원** 다른 나라는 그렇게 연금공단이 불안하게 정치적으로 이런 거에 막 휩싸이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위원님, 일본의 GPIF는 전액을 민간 위탁하는데요 작년 수익률 마이너스 7.7%, 약 120조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언론이나 국회에서 그 수익률이 낮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좀 길게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김명연 위원** 이사장님.

○**위원장 이명수** 자, 마무리하시고……

○**김명연 위원** 이사장님, 내가 2차 질의 때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어요. 내가 지금 질문을 여러 꼭지를 하려고 줄여서 압축해서 짚고 넘어가는 건데 인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조직 운영을 잘못하고 인력 운용을 못하고 있으면서.

역대 수익률 이렇게 마이너스 난 게 얼마였어요? 3년 평균 3.48%예요.

○**위원장 이명수** 자, 추가질의하시지요.

○**김명연 위원** 그러면서 일본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당장 그렇게 좋은 자리의, 중요한 자리의 조직이 비어 있는데, 이것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뉴욕소장을 갖다가 비워 놓고 그걸 못 채우고 있으면서…… 그것 코드 맞는 사람 기다리느라고 아직까지 안 채우는 거예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렇지 않습니다. 기금본부의 운용역에 대한 채용의 권한은 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있지 않고 기금본부장에 의해서 하는 건데……

○**김명연 위원** 기금본부장이 늦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금공단 이사장이 함께 고민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상급기관 아닙니까, 산하기관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첫 업무보고니까 여러 꼭지를 두루두루 이렇게 짚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 늘 정치인들이 이사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권에 맞춰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처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 없는 스투어드십 코드 이런 걸 갖고……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위원님, 우려는 잘 알겠지만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은 안정된 상태에서 잘하고 있다, 오히려 어떤……

○**김명연 위원** 이런 기사 봤어요, 이사장님? 실무자에게 2018년은……

○**위원장 이명수** 정리하시지요.

○**김명연 위원** 예, 끝내겠습니다.

‘일단 대기’, ‘나중에’ 이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을 못 하니깐. 언론에다 이런 인터뷰를 지금 실무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재 유출을 막지 못하면 어떠한 시도도 실패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거기 실무자들이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시고 조직 내부를 내가 어떻게 단도리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신년에는 기금운용본부장하고 내가 뭐를 중점적으로 위주로 해야겠구나,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그다음에 수익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걸 구체적으로 나열을 안 하니깐 지금 엄청나게 안정되어 있는 조직처럼 보이는데 이게 거기 실무자들이 인터뷰한 내용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하여튼 뭐 시간이 지연됐는데 애쓰셨고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짧게만 그냥……

○**위원장 이명수** 뭐 말씀하실 거예요, 특별히?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말씀드리면요……

○**위원장 이명수** 간략히 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불안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뉴욕사무소장은 최근에 채용이 완료됐다고 하는 것도 확인을 해 드립니다.

○**위원장 이명수** 하여튼 우리 국민의 입장이나 국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익률을 올리도록 말씀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연금공단이 중장기적으로 해야지 단기간의 수익률 때문에 우리가 일회일비할 일은 아닌데, 하여튼 외국에 이렇게 적자가 많은 데도 있다 이걸 이사장님이 말씀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해달라는 주문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위원장 이명수**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바로 이어서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 시간은 앞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겠습니까.

○**기동민 위원** 김성주 이사장님, 원래 국회가 칭찬하는 데가 아니에요. 잘 하시잖아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걱정을 전달하고 지적하는 자리입니다. 잘 들어 주시고요.

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를 왜 놔둔 겁니까? 부당한 내부자거래를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도입 취지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도입 취지가 그런 거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기동민 위원** 지난번에 10% 룰, 총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지분이 있는 국민연금이 소위 10% 룰 때문에 대한항공에 대해서 경영권 행사 이런 부분을 하지 못했어요. 그 계산하는 과정에서 저는 좀 납득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손실 부분이 한때는 사백몇십억이었다가 나중에는 또 계산해 보니까 한 백몇십억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백몇십억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니, 그 많은 손실을 감수하고서 뭐 하러 경영권 행사를 해?’ 이렇게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요.

실무자의 착오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국민연금이 책임져야 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가 대단히 큰 실수를 한 것이다, 아니면 고의적으로 업무를 해태한 것이다 이런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스튜어드십 코드가 대단히 제한적인 차원의 상징적 조치로 뭔가 시장에 신호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좌지우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시장답게 개혁하겠다는 취지에서 파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첫 적용 사례에서 저는 무딘 칼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태산명동서 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 되었다고 보는 거지요. 예리한 칼은 뽑기 전에 훨씬 더 위력이 있는 것이고 뽑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성과를 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를 별로 내지 못했다, 자체적인 평가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10% 룰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 관련된 계산은 실무적인 오류가 있었고요. 다만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게 처음 있었던 일여서 수기로 계산하다 보니 그런 오류가 있었고……

○**기동민 위원** 처음 있었던 일이니까 훨씬 더 정교하게 했어야 되는 거지요.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것은 정부가 아마 추어라는 얘기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래서 처음에 수탁자책임위 보고 때는 오류가 있었지만 그 후에 실무평가회의나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보고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단차 반환이라는 문제가 너무 지나치게 부각된 측면도 있었다라고 하는 뒤늦은 판단이 있었습니다.

○**기동민 위원** 저는 그 평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장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고 또 언론의 논조라든지 보수적인 경제지 중심으로는 대단히 막대한 경영권을 침해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시장에 불통을 튀길 것처럼 예단하는 측면들도 있었거든요. 저는 잘 평가해서 이후를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원래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 이런 부분들이 대법원 판례를 본다든지, 아니면 국민연금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

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적용되었을 때 국민연금의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판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보니까 그 근거가 금융위원회 고시더라고요.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7-24호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8조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관리나 운용을 위한 매매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예외적으로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적용 제외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례한 거나 원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이 금융위원회의 고시는 대단히 상충되고 모순된 측면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금융위원회에서 뭔가 제도적인 보완을 하겠다고 올 금융위원회 신년 업무보고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해석상의 문제들을 말씀하게 해결해 주기를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 원래의 정신에 충실한 해석들을 잘 해서 법령들을 정비하고 고시들을 잘 정비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처음 적용된 사례, 그 사례에 대한 정확한 분석 그리고 이후의 대처방안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아주 명확하고 정확한 해석과 해설들을 저는 시장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타산지석이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실제 불투명한 기업 가치를 더욱더 투명한 시장으로, 주주자본으로의 전환 이런 부분을 이루어낼 수 있는 대단히 소중한 사례이기 때문에 잘 분석하고 잘 평가하시고 좀 불합리한 제도 그리고 불일치하는 법령, 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정비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그렇게 철저

하게 잘 준비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기동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잘 준비하고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김성주 연금관리공단 이사장님, 본 위원이 지난해 국감에서 국민연금개혁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책임감을 갖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종필 위원 이사장님, 그런데 연금개혁안이 어떻게 보고되었습니까? 여야가 머리 맞대고 입법을 위한 합의를 도모하는 국회에 마치 네 번 불을 차면 한 골은 먹힐 것이라는 이런 사지선다형 개편안을 던져 놓았다고 저는 보는데요.

만약 일차적으로 합의안 도출을 맡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4월 말까지 6개월 내에 합의안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국회가 합의안을 만들어 내야 될 모양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국민이 수긍할 최적의 개혁안을 준비하고 경사노위와 국회에 동의를 구해야 할 판에 어찌 옵션 패키지를 던져 놓음으로써 복지부와 공단 스스로 직무유기를 인정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윤종필 위원 최근 언론에서 공단이 산하기관 직원들의 처우개선에는 힘쓰고 있다는 보도 많이 나왔습니다. 기금의 수익률 제고와 연금개혁안 같은 주요 업무에는 소홀히 하면서 직원들 복리후생에는 면밀히 챙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고받으셨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윤종필 위원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했는데 이에 반해서 공단 직원의 처우는 꾸준히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는 거지요. 공단 정규직의 평균 연봉이 최근 5년간 5700만 원에서 6300만 원으로 약 6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납세자 평균 3200만 원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인데 성과급이나 상여금은 동 기간 약 20% 증가해서 직원에 대한 처우가 월등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장님, 연금관리 주무부처로서 기금운용과 개혁안 준비에 소홀히 하면서 직원들의 처우개선에는 충실히 했다는 이 말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의 급여 수준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이고요……

○윤종필 위원 예, 낮지만 너무 동 기간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특히 저희 기금운용역들의 경우에는 시장 평균의 한 50% 수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윤종필 위원 어쨌든 동 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 세간에는 공단이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개혁안을 옵션 패키지로 제안하자고 건의했다는 이런 지적도 들려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건 가짜뉴스 같습니다.

○윤종필 위원 이 지적 맞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윤종필 위원 기금운용 실패와 막대한 손실에 대해서 공단의 수장이 책임 있는 모습 보여야 한다는 지적도 다수 있습니다. 이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최선을 다해서 운용을 저희들은 해 오고 있고요. 또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필 위원 이사장님, 좋을 때 잘하고 어려울 때 못하면 기금운용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가 어려운 시기에도 8.4%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손실 회복하고 지금은 괜찮다…… 이것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시고 반성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캐나다 CPPIB 사례는 정말 좋은 사례인데요. 대신 캐나다 CPPIB는 우리에게 비해서 장점이 대체투자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윤종필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리고 저희 국민

연금은 운용하는 인력이 한 300명 남짓인데 캐나다라는 약 1500명 되고요. 그들이 받고 있는 급여 수준은……

○윤종필 위원 그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사장님, 좋을 때 잘하는 것보다 어려울 때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저희도 작년에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해서……

○윤종필 위원 인원으로 비교하거나 수익률로 비교하거나 이런 부분은 어쨌든 실패 원인 철저히 분석해서 가지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하게 이번 사태 넘어가서는 안 될 거고요, 관련 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도 묻고 기금운용을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모두 다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성장률을 다시 개선하기 위해서 위기 대응 전략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작년에 저희가 국내 증시 때문에 상당히 부진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도 다른 해외 연기금에 비하면 저희가 굉장히 양호한 편이었다 다시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수익률 제고를 제1의 목표로 삼고 특히 저희가 해외투자, 대체투자 쪽으로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히 해외사무소 기능 강화, 인력 보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종필 위원 하여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가지고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부진한 부분은 저희도 열심히 보완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수 윤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명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명연 위원 김성주 이사장님, 혹시 국민연금에서 일자리안정자금 담당기관으로 위탁계약을

했습니까, 정부하고?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 위원** 아직 안 하고? 계속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작년에는 계약 없이 저희가 했고요, 올해는 아마 고용부에서 해당 예산을 내려 보내 주는 조건으로……

○**김명연 위원**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협약을 하자고 그러는데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 위원** 김용익 이사장님, 건보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3월 말경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 위원** 지금 그 일을 하면서 충분한 인력과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비용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하고 있습니까?

두 기관, 어떠세요? 양대 노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작년에는 특별한 지원이 없이 했고요, 금년에는 약 6개월 분량의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국민연금도 17억 6000만 원의 인건비 지원을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연 위원** 지금 두 공단의 노조가 성명서까지 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연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계속 거기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업무인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저희가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 확대 차원에서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수행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력이 늘어나지도 않고 예산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그 예산으로 6개월 정도 임시계약직 인력을 채용할 생각입니다.

○**김명연 위원** 이사장님, 0.92% 수익률 저하되는데 무려 6조 원이 날아간 겁니다. 전년 대비 또 외국 대비해서 낮다, 부족하다 이런 차원의……

지금 캐나다의 8.4%하고 또 국내의 행정공제

회도 4% 수익 나고, 물론 투자에 대한 유형은 다 틀리지만 우리는 또 더 좋은 데 갖다 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국민연금공단은 2057년도에는 고갈되는 재정추계가 나왔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내라고 그랬더니 사지선다형으로 해서 국회에 던져 놓고 정부에서 결정도 못 하고 앉아 있고 시간은 자꾸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내가 국민연금을 계속 이렇게 가입해서 돈을 내야겠느냐, 나중에 못 받을 것 같다……

건보도 적자로 전환됐으니 나중에 부과식이 나중에 얼마의 건보료 인상으로 올까, 이것 걱정하는 게 국민들의 마음이에요.

이걸 갖다가 안정시키려면 집중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이런 것을 갖다 위탁받아 가지고, 또 작년에는 위탁도 안 한 상태에서 일을 시키니까 근로자들이, 직원들이 그 가외 업무를 하면서, 또 각 지사별로 실적이 비교되니까 지사장들이 얼마나 고충이 심하겠어요.

내가 듣는 정보로는 이것 야당한테 흘러갈까 봐 문서도 안 남기고 유선으로 통화를 해야 되고 이래 가면서 실적을 만들려니까 그분들이 참 미치겠는 거예요. 오죽하면 양대 공단의 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합니까? 사실 어려운 사람들, 소상공인들 안정자금 주는 거라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업무가 아니예요.

건보공단은 지금 3601가지 급여화시켜 가지고 병원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건보재정이 어려워지고 있고.

국민연금은 수익뿐만 아니라 조직이,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조직 안정이 안 된다는 것은 물론 기금운용본부하고 연금공단하고 차이는 있지만 한 기관으로 봤을 때 그 가뭄일들을 갖다 더 압박하고 하니깐 이것 내 일 아닌데 자꾸 한다, 부당하고 그러니까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있으면 나가는 거예요, 사명감 없이.

왜 이런 데까지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하려고 그래요? 국민들이 국민연금보고 안정자금 주는 것 그 일 한다고 잘한다고 그러겠어요?

수익률 0.1% 저하되는데 10개월 고갈 시점이 단축되는 거 다 알고 계시지요? 이것 이제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국민연금 관리 잘하고 제도개선해 가지고 57년도에 고갈되지 않고 우리까지 지속적으로 이 연

금 혜택에서 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게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는 90%는 그것인데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치하느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고용부가 다 해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조직이 부족하면 고용부가 인력 받아 가지고 자금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해야지 왜 국민연금공단하고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이런 업무를 주느냐 말이에요. 이걸 받는 공단은 또 뭐예요, 두 분 이사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수고 많으시고,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하시라는 주문인 것 같아요.

다음은 존경하는 손해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손혜원 위원** 마포울의 손해원입니다.

아까 하다 만 질의, 최성락 차장님께 하겠습니다.

제가 만두사건과 치약사건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작년에 그 유명한 생리대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식약처에 계셨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있었습니다.

**○손혜원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그 상황을 한번……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그 전에 사실은 좀 예측이 된 건데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이 조금 아쉽고. 그런 면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전예방, 문제가 있을 때 의제…… 사전 예방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손혜원 위원**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공포 마케팅이에요. 제가 이번에 SBS 오보 사태로 당한 일을 보니까요 그냥 남자가 여자가 될 것 같아요, 언론에 의해서. 가짜뉴스에 의해서 그냥 사람이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단 터뜨려 놓고 보는 것이지요. 뭐 하나 걸릴 거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러나 그들이 제가 살아온 평생을 그렇게 망쳐 놓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게 지금 똑같습니다. 멀쩡하게 몇 달 뒤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단체가 나섰고 지표를 들이밀었고 언론들이 나와서 발각 뒤집혔고 반품 사태가 일어나고 그리고 회사는 망할 지경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이 저는 식약처에서 뭘 잘못했더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자행하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그 생리대 사태, 그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어떻게 처단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런 죄값을 받지 않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그분들은 당사자인 회사에서 고발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문제 관련해서는 작년 국감에서도,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손혜원 위원** 제가 보기에요 국감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결이 되어야 돼요.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식품과 의약품에 관련해서는 적어도 식약처에서 매뉴얼을 갖고 이런 식으로 공포 마케팅을 자행하는 자들에 대한 처단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식약처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국민들과 생산하는 업체나 소비자들이 함께 우롱당하는 거거든요. 소비되는 그 헛된 시간들과 그 사람들의 많은 돈들은 다 어떻게 누가 그것을 보상합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이렇게 2년, 3년에 한 번씩 조금씩 바뀌어 가면서 자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식약처에서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우리가 다 같이 앞으로 한 1년 이상 같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자행하는 자들에 대한 뭔가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같이 한번 이 일을 만들어 가도록 하고요.

이사장님, 제가 아까 좀 이상하다고 느낀 것 하나가 문다혜 씨가 공인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시겠어요? 문다혜 씨가 공인입니까?

제가 사전 찾아봤더니요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공인이에요, 경호나 기타 국가의 세금이 이 사람한테 들어가서 공인이 아니고. 문다혜 씨는 아버지가 공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던 원하지 않든 공인의 밑에서 불편하게, 그러나 뭐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런데 저는 문다혜 씨를 공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공적인 일에 관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다혜 씨가 공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모든 국민이 보호받는 그런 정보에서 제외돼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인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돼야 된다는 전제도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권이 존중되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저는 문다혜 씨의 사생활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세금으로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문다혜 씨가 공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 사람은 공개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를 생각했구요.

저 1분 아까 안 받았는데 한 번만 더 주시겠습니까, 오늘 처음 왔는데?

○위원장 이명수 예, 1분 하십시오.

○손혜원 위원 저는 오늘 국민연금에 사실 할 말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국정조사에 저는 위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할 말이 많고요. 그리고 왜 대통령의 공약에는 있었던 그런 공공주택이 100대 공약에서는 빠졌는지 이런 것들도 저는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련된 그 과정에만 굉장히 집중해서 그 당시에는 했는데 그다음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익을 냈느니 못 냈느니 마이너스가 됐느니 이런 부분들은 누가 보든지 지표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지금 국민연금이 휘말리고 있다는 그런 전제는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홍완선과 문형표 이사장 둘 다 그 당시에 정치권에 이용돼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유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보면서 해야 된다는 생각 하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유 때문에 국민연금을 지금 이렇게 저렇게 나무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일로는 나무랄 게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딱 한 말씀만 드리면요,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나 국회로부터 기금운용에 대한 이런저런 주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 독립성은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수익률은 시장 상황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조금 인내력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라, 그리고 반드시 높은 성과로 저희가 응답하겠다고 하는 약속도 드립니다.

○손혜원 위원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우리가 국민연금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길게 봐야 된다는 것이고……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런 시야를 넓혀주는 역할을 좀 위원님께서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혜원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명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아쉽습니다만 또 다음 기회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제세 위원 식약처 차장님, 줄기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품목이 지금 실적이 없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오제세 위원 다른 나라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서 조건부 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오제세 위원 또 이번에 저하고 이명수 위원장님하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법률 개정안 낸 것도 아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오제세 위원 이것 통과 전망이 어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저희들은 지난번에 소위에서 공청을 했고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한 것들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내에 꼭 통과되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들도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제세 위원** 줄기세포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지금 상당히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필요성이 아주 높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오제세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평원장님께, 아까 요양급여 등재에 대한 절차 개선, 원스톱 제도 또 선진입·후평가 제도 이것을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것 원장님이 무엇을 원스톱 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 내용을 직접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다시 한번 제가 챙겨 가지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제세 위원** 이것 지금 대통령도 말씀하신 사항이고, 얼마나 시급하면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그런데 기관장께서 그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다만 제가 그냥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것을 선진입·후평가하는 데는 지금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해 가지고 과연 이게 이 길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번 국정감사에서 말씀해 주신 게 있고 그래 가지고 좀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오제세 위원** 그게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여기서 또 등재하기 위해서…… 식약처에서는 뭐 합니까, 그러면? 거기도 안전성·유효성 검사다…… 식약처에서 그것 허가 낸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오제세 위원** 그랬는데 그것을 그다음에 또 뭘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그래서 이것을 원스톱으로 해라…… 국가기관에서 동시에 허가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동시에 같이, 식약처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심평원에서 같이 동시에 검토해서 텀을 최대한 줄여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제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일규 위원** 원장님, 심사평가체계 개편이라는 올해 제일 큰일을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없으

니까 잠깐만……

사실은 우리가 관례적으로 떠드는 이야기가 심평의학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전문성·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환자 중심, 의학적 근거 중심으로 심사체계를 전환하겠다는 게 캐치프레이즈잖아요.

그런 점에서 과잉진료도 없애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PRC·SRC 하는데 결국은 끝까지 잘 나가다 끝에 TRC가, 굉장히 중요한 전문가 시스템의 심사에 비전문가들이 개입하면서 이게 그 자체의 원래 목적이 흐트러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그런 전문성 자체의 권위가 없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잘 만들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것 제가 보건복지부에도 확인한 이야기인데, 첩약을 급여화하겠다는 거 하는데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했습니까, 이것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아닙니다.

**○윤일규 위원** 그러면 협의 없이 그냥 강행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아닙니다. 지금 첩약 급여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이 시범사업을 이렇게 19년 12월로 못 박은 것은 저희도 잘 못 본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윤일규 위원** 이것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잘 하고, 굉장히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될 위험이 있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난번 추나요법 사건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 지금 건강보험공단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사실은 국가의 공보험 시스템이거든요. 둘 다 보험인데, 결국은 국민의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가 주목적일 건데 2019년도 중점 추진업무를 보면 제가 보기에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증진 서비스 강화 등……

제가 본 것은 보건복지부의, 이것은 정부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하는 것 등등을 보면 원래 재정을 효율적 관리하는 그 업무 이외의 업무 쪽으로 업무가 확대되는 것을 제가 조금은 염려하는 것이…… 우리가 늘 염려하는 것이 개편의 법칙 같은 그런 것의 우려를 혹시 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사무장병원인데요. 사무장병원 미수금이 지금 아마 2조 중에서 겨우 6% 정도밖에 안 되는 돈만 거둬들이면서 현재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환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 환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개원 당시부터…… 왜냐하면 그 정보를 제일 많이 아는 것이 그쪽의 같은 업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의료인들이 제일 많이 알지요. 그래서 개설할 때 사전에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아니면 직접 그렇게 고용된 사람들에게 자기 스스로가 신고를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면제하면서 사전에 이것을 방지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제가 건의를 했는데, 사실 지금 같은 형태로 나가면 결국은 나중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하는 그런 강제적인 형태가 나오면 오히려 효율은 떨어지고 내가 보기에는 너무 권위주의적으로 나갈 위험을 안고 있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시도 의사회 의 의견을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 내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보공단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복지부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복지부와 협의가 되어야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일규 위원** 제가 법안 발의를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전문직종인 변호사회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 자체의 도덕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도 동일인들에 의해서 감시와 이런 것이 정보를 제일 많이 얻기 때문에, 사무장병원이 거의 2조에 가까운 돈을 회수를 못 하고 있고 또 도덕적 해이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강조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그런 쪽으로 좀 강화를 해 보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식품안전처에 묻고 싶은 건데요.

실제로 지금 미세먼지에서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 초극미세먼지입니다. 그냥 극미세먼지가 아니라 초극미세먼지는 0.1 $\mu\text{m}$  이하입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로 죽어 가는 게 1년에 한 300만~600만이 죽어 갑니다. 그리고 사망자 9명 중의 1명꼴이 미세먼지로 죽어 가고 있고 그중에서 뇌졸중 원인의 20%가 사실은 극미세먼지입니다. 사실은 미세먼지가 제일 두려운 것은, 실제로 이것이 역

사적으로……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질병예방 차원을 어떻게 할 건지, 전체 미세먼지를 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을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데 있어서 지금 마스크가 초극미세 0.1 $\mu\text{m}$ 는 얼마나 걸러 내는가, 왜냐하면 초극미세먼지는 60% 이상이 자동차 매연으로 딱 나옵니다. 이게 과연 그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까? 그게 그냥 극미세먼지가 아니라 초극미세먼지.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일규 위원** 그리고 실제로 국가에서 지금 하는, 예를 들면 공기정화 문제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건강을 예방하고 하는 데 효율적인가, 그러면 이럴 때 건강한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해서 국가가 정책을 했으면 나는 좋겠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윤일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김승택 심평원 원장님, 보험사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 보셨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예.

○**장정숙 위원** 제가 본 의원실에서 뽑아 본 보험사기단의 행태 이런 것을 보니까 두 살배기 아이까지 동원한 보험사기단 적발, 척추장애 보험금 10억 받고 차량 운전, 금감원이 적발한 황당 보험사기,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타고만 있어도 20만 원, 여기 보여 드리는 것만 해도 10장이 넘는데 이렇게 최근의 보험사기는 굉장히 조직화되고 또 흉포화되고 지능화되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원장님?

그러다 보니까 보험 누수에 따른 전체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회 전반에 아주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3년 전에, 16년 3월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특별법 시행 이후에 그러면 뭐가 달라졌나 이라고 제가 보니까 보험사기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무지하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지난 3년간 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도리어 보험사기 추정액이 2017년에 6조 원을 돌파하더라고요. 그러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더 큰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심지어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민영보험 부문에서 연간 보험사기로 인해서 누수되는 금액이 17년 기준으로 해서 약 6조 2000억으로 추정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 보십시오.

또 연간 지급보험금 규모 106조 원의 5.8%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러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2014년도에 비해서 무려 42.5%, 1조 8000여억 원이나 증가한 액수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험사기로 지급액이 늘어나면 무려 한 가구당 31만 5000원, 국민 1인당 12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고 금융감독원이 발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경찰청 자료를 보면 5년간 보험사기로 인한 검거 건수가 18년에 3225건, 14년 1551건에 비해서 무려 108%가 증가했습니다, 원장님. 적발 금액도 총 1조 4008억 원으로 159%가 증가를 합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사건 수, 피해액 규모가 커지는 이유가 원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

○장정숙 위원 답변 못 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여론의 평가를 보면,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에 대해서 아주 신속한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기관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기하고 있는데 심평원에서 심사 업무가 지연이 돼요, 심사 업무가. 그러니 보험사기 수사가 어렵다고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예.

○장정숙 위원 그래서 2016년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수사기관, 즉 경찰이나 검찰은 심평원에 어떤 것을 의뢰하셨습니까? 입원적정성 검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예.

○장정숙 위원 그 역할은 심평원이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니깐 그것을 믿고 의뢰를 한 겁니다.

보험사기 조사 업무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가 조사 업무 담당합니까? 공공심사위원회, 그렇지요? 그런데 그나마도 한 명 또 결원이예요, 제가 오늘 자료 받아 본 것으로는.

그래서 심평원이 본 의원실에다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입원적정성 심사 미결 건수가 15년에는 33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8년에는 3만 3892건, 10.3배가 증가합니다. 평균 처리일수, 15년에는 98일인데 18년에는 479일로 4.9배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욱 심각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게 다 고스란히 국민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또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의견서가 전문 증거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공심사위원회 소속 작성한 사람, 그 심사위원 작성자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서 해야 된다는 판시가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예.

○장정숙 위원 도표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증인의 불출석을 사유로 증거능력 불인정. 출석을 안 해, 그러면 증거로 인정을 못 하는 거지요.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장님? 입원적정성 심사 의견서 작성자가 법원 출석을 안 하면 보험사기 혐의자가 무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런데 법 시행 이후에 이런 작성자 법원 출석을 70건 요구했는데 48번밖에 출석 안 해. 출석 비율이 68%밖에 되지 않아. 심지어 대법원 판결처럼 의사인 심사위원의 출석이 18년까지 단 3건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심평원에서는 ‘우리는 주 업무가 보험사기가 아니야’ 그러셔서 사기 조사에 소극적이예요. 예산·인력 부족하다고 변명만 하신다는 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이 불어나면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 늘어나지요, 그렇지요? 더 나아가서 국민건강보험제정 누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심평원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국민들한테?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이명수 예, 이것 끝나고 이따가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신임 식약처장님이 없으니까 질의할 대상이 없어서…… 그런데 하여튼 모친상을 당하셨다니까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안정적이면서도 수익률을 많이 내게 운영하라, 쉬운 일은 아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동안 스튜어드십 코드 문제도 사실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에 반성하면서 도입된 거예요. 문형표 이사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국민연금에 엄청난 손실을 입혔잖아요.

그때 손실액을 얼마 정도 추정했지요? 한 3000억이 넘었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당시에 수천억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문제하고 또 수익률을 많이 내야 되는데 작년에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0.9%를 기록하면서 논란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연금이 -1.7%, 군인연금이 -2.06%, 사학연금이 -2.45%, 그래서 타 연금보다는 선방했다 이렇게 나름대로 자위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제기했지만 국민연금과 비슷한 캐나다의 CPPIB 같은 경우는 8.4%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말이지요. 그래서 나

름대로 선방했다라고 자위할 일이 아니고 이 문제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한 철저한 반성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금운용본부의 수익률이 떨어진 것을 일부 언론에서 지역 이전과 연관시켜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인력 문제도 그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그래서 기금운용본부의 수익률 하락 문제하고 지역 이전과 어떤 함수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전 첫해의 수익률이 얼마였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7.26%였습니다.

○김광수 위원 하여튼 기금운용본부의 지역 이전과 수익률 저하, 어떤 함수관계가 있는가 계속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사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저희는 전 세계 82개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세계 세 번째 연기금이고요. 수익률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산배분 구조에 90% 이상 의존합니다. 즉, 채권·주식·대체 중에서 어디에 많이 투자하느냐, 채권은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이삼 %대 수익률밖에 볼 수 없고요. 주식은 등락은 심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봅니다. 대체는 한 중간 정도 되거든요.

캐나다 CPPIB는 주식과 대체를 포함한, 소위 위험자산의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우리는 2개를 합쳐서 한 40%대거든요. 거기에서 수익률 격차가 나는 겁니다.

작년에 대체투자 부분에서 국민연금이 거둔 수익률은 11.8%입니다. 저희가 모든 자산을 대체투자 방식으로 했다고 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국내 채권에도 투자해야 되고 국내 주식도 투자해야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기금운용본부와 비슷한 어떤 연금이라든지, 예를 들면 한국투자공사나 이런 것들이 직접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후보 시절에 대선 공약으로 제3금융중심지를 공약했어요. 그리고 그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 문제도 지금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용역 결과가 연기되고 추진위원회 회의도 연기되고 또 일부 언론에서 제3의 금융중심지 시기상조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장께서는 예전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계속 연기, 연기를 하다가 정말로 연기만 피우다가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말씀하신 대로 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도시의 비전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고요. 정부의 국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지정에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융위원회가 담당해서 제가 정확한 정보는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서 부산 지역에서 새로운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좀 들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는 서울에 있는 금융기능을 부산과 전주로 분산시키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서울과 부산과 전주가 금융 트라이앵글을 이어서 전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원래 이 구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과 전주는 서로 다른 특성의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전주는 연기금 중심의 자산운용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겠다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산과 중복되거나 경쟁할 수 있는 상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제가 다른 질의를 물어볼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문다혜 씨 논란과 관련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된 게 왜 논란이 됐느냐 하면 문다혜 씨 가족들이 해외에 이주를 했는지 아니면 장기체류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가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귀국을 해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다시 출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출국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국제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입국을 해 가지고 그대로 있었으면 아이가 국제학교에 입학한 것은 어찌 보면 불법일 수도 있으니까, 여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출국을 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의혹이 뭐냐 하면 일반 내국인의 경우에는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외국에 나간 사람,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장기체류해 가지고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올 때 자격이 상실됐기 때문에 구법에 의하면 3개월 체류를 해야지만 자격이 다시 복원이 되고 작년 12월 이후에 개정된 것에 의하면 6개월 이후가 되어야지 자격이 다시 복원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외국인 먹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치를 취한 거예요.

맞지요? 거기까지는 맞지요, 그렇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예.

**○김승희 위원** 그런데 장기체류를 하면서 자기 국적이 상실됐거나 아니면 자격이 변동…… 아까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자격 변동이나 아니면 국적이 상실됐거나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 계속 외국에 있다가 아프면 들어와요. 들어와서 치료를 받고 한 달 치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추후 내는 거지요. 그런데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몰라요, 체납됐는지. 다시 나가요. 또 아프면 다시 들어와서 그 달 치만 내면 되는 거야, 지금 현행법에는.

이것이야말로 먹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것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내가 자료를 요구하고 질의를 한 겁니다. 시간 없으니까 대책 마련해서 나중에 달라고 했고. 맞지요, 그렇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예.

**○김승희 위원** 그런데 지금 문다혜 씨의 경우에 사전적 의미의 공인이든 아니든 평범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건보료 가지고 먹튀를 한 건지 아닌 건지. 그렇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공적인 일을 하든 안 하든 대통령의 가족이고 경호로 보호를 받고 있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람인데 거기에 나갔는데

들어오면 그게 불법이든 아니면 합법이든 간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고 또 나가고 이런 것은 지금 현행법상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것은 추후 답변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자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떳떳하다면, 합법적이라면 자료를 안 낼 이유가 없어요. 왜 그것을 자료를 안 냅니까? 의혹을 확실히 불식시켜야지. 공인도 마찬가지로 개인 비밀, 사생활 침해를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분명히 뭐라 그랬느냐면요 헌법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국가에 관련된 법조항을 얘기해서 자료를 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헌법에서 모든 개인, 대통령도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취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질의를 할 때…… 사인이 아닌 경우를 얘기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의혹이 되어 있으니 국민적 의혹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아니면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라도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여튼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보니까 질의하는 도중에 이게 뭐가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명확하게 건보공단 이사장님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예, 좀 말씀을 드리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승희 위원 저도 1분만 더 주세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 제가 1월 달에 수익률 가지고 질의를 했을 때 마이너스였잖아요, 작년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김승희 위원 그랬을 때 국내의 증시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지금은 또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본인들이 잘해서, 국내 증시 상황은 얘기를 안 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때 제가 질문한 게 뭐냐 하면 벤치마크 수익률에 비해서 그냥 돈 갖고만 있으면…… 벤치마크 수익률, 국내 증시의 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코스피 지표라든지. 그것에 비

해서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마이너스인데. 그렇다면 투자를 잘못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단기수익률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포트폴리오라든지, 캐나다는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것을 다변화시켜야 되고 이것을 국회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은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적 사항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당연합니다.

○김승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김명연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그렇게 답변하거나 아니면 윤종필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답답한 면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운용 실적이 좋았을 때는 시장 상황이 좋아서 운이 좋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시장 상황이 나빠서 실적이 나쁠 때는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듣는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역들 입장은 상당히 괴롭습니다.

저는 공단 이사장으로서 장기적이고 안정적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런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의식은 충분히 동의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불안을 자극했을 경우에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다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수 김용익 이사장님 말씀하실 것 말씀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형태의 자격이 없는 동포 또는 우리 국민이 진료를 받고 다시 외국으로 나가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대책은 강구를 하겠고 또 일반적인 자료나 통계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인의 자료는 문제가 없으면 뿔뿔하게 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그 정보의 당사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공단은 그런 자료를 제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법률적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드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의 선택권이 아닌 것이지요.

그다음에 드나드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선의로 자주 외국을 드나드는, 예를 들어 사업상 그렇게 드나들고 드나드는 사이에 아프면 당연히 한국에 있을 때는 진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 수급권을 복구시켜 주는 것입니다, 나가면 다시 정지가 되고. 그런데 악의적으로 일부러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진료를 받고 보험료는 내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람의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앞에 먼저 말씀드린 선의의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권리를 드려야지 되고 또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은 편의를 드려야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구별되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그 구별하는 방법은 최대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빅데이터 분석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성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들락날락하면서 진료만 받고 나가는 경우 이것은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선의의 이용자하고 악의의 이용자하고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예, 그러니까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김승희 위원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의의 이용자라 하더라도 본인들이 계속 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외국에 나가면 중단이 되잖아요. 그리고 들어와서, 물론 들어와서 이용 안 할 수도 있고 들어왔을 때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 갖고 본인이 혜택을 받는 건 내국인에 비해서 불평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강구를 해야 된다고, 단기는 6개월 체류하는 사람 아니면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차별화하든지 뭔가를 차별화해서, 선이나 악이나를 가지고 구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그걸 구분해 갖고…… 내국인들은 평생 안 아파도 보험료 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예, 그 방법도……

○김승희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먹튀 현상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예, 그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아무튼 그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2차 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소하 위원 먼저 오늘 첫날인데 모친상을 당하신 신임 식약처장님께 심심한 조의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뜻을 전해 드리고요.

일단 차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화면은 과기부 1호 규제 샌드박스 제품입니다.

저 손목형 심전계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든 간에 사전에 협의 요청이 있었던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저것은……

○윤소하 위원 협의 요청받은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실무적으로는 없고요. 제가 나중에 회의 때는 참석했는데 그때는 이 샌드박스 논의보다는 저 제품을 복지부에서 규제 특례를 하려면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증 관련해서는 제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윤소하 위원 아니, 과기부가 규제 샌드박스로서 이 제품을 발표하기 전까지 식약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황당한 것은 이 제품은 아직 식약처의 제품 허가가 난 것이 아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윤소하 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제품 허가도 나지 않은 제품을 다른 부처에서 규제개혁 대상으로 공식 발표를 합니까? 이것 식약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제품 허가를 전제로 발표했다고 그래요, 거기서.

그러면 제품 허가가 안 되면 과기부 발표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체? 정부 발표 꼴이 우스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과기부가 식약처에게 ‘해당 제품을 허가해라’ 하고 압력을 보내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이 방식이 맞

아요?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큰일인데, 과기부나 산자부에서 계속 발표할 텐데 매번 식약처 이렇게 끌려다녀야 됩니까? 차장님, 문제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하여튼 그런 기준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원칙 아래 매뉴얼도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요. 안전과 관련된 건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그러니까요 과기부, 산자부, 복지부와의 협의에서 식약처가 배제되지 않는 프로토콜을 만드셔야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그런 협의체를 만들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식약처가 관여되는 규제 샌드박스 추진 상황에 대해서 의원실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ですよ.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1형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15개 항목 정보를 수집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인데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속혈당측정기는 의료기기와 연동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이름, 주민번호, 생년월일, 성별, 거주지, 우편번호, 이메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더욱이 이 정보를 구축하는 게 외국에 있는 서버인데요, 개인정보를 포함한 당뇨병 정보가 고스란히 외국 서버에 집적되는 거다. 문제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이사장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예, 좀 곤란하게 됐습니다.

○**윤소하 위원**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건강정보를 과다하게 집적하는 데이터 관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추진계획 발표하셨잖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그러니까요……

○**윤소하 위원**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예, 알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보안 문제도 해결하면서 개인정보와 연계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주실 것

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부탁드립니다. 말씀 간단히 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지금 그러니까 그 회사의 서버에 자료가 다 축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다가 축적되는 것만으로 남겨 두는 것이 위험하고 건강보험에서 이 자료를 받아서 관리를 하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료는 축적이 되는데 외국 회사만 있는 것보다는 공적인 건강보험공단이 받아서 관리를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윤소하 위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니까요, 말씀하실 부분은 구체적으로 의원실로 같이 보내 주시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예, 알겠습니다.

○**윤소하 위원** 김성주 이사장님.

아까 기동민 위원님께서 저하고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중언부언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대한항공에 대해 제대로 된 스텐더십 코드 정신에 의해서 경영 참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한진그룹에 대해서 대단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지요. 소위 단기매매차익금 반환금 문제인데 10%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처음에 108억이었던가요, 그리고 그다음에 72억.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기금운용본부는 대단히 전문가들이 모인 곳인데 이렇게, 그것도 추정치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일부 중복 산정이 있고요. 어느 기간을 잘라서 계산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미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산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윤소하 위원** 저는 기동민 위원님 지적에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단기매매가 스텐더십 코드를 적용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이기 때문에 단기매매는 최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론입니다.

위탁운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위탁운용을 하다 보면 단기매매차익에 대단히 집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특성상. 그래서 이 불필요한 위

탁운용사들의 단타 매매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하고 이번 대한항공 경영 참여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에 대한 의지는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이었던 말이지요. 국민들도 관심이 많았구요.

그런데 부정확한 추정치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거로 제한적 경영 참여가 결정된 것은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 취지대로 잘 해 주시도록 부탁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단타 매매 줄일 방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부는 직접 운용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위탁운용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사실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위탁 쪽에서는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저희가 사실은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말기면 모든 것을, 매매 행위에 개입할 수 없는 게 현재의 규정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한항공 관련된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는 기금 운용위원회와 수탁자책임위원회가 충분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서 저는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침을 잘 만들어 가면서 원칙대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또 공정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소하 위원 본 취지가 더욱더 제대로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윤소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들 계신가요? 거수를 해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두 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장정숙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3분입니다.

○장정숙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원장님, 아까에 이어서, 심지어 대법원 판결처럼 의사인 심사위원의 출석이 18년까지 세 번밖에 안 이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한 건수가 몇 건이었는데, 3건밖에 안 됐다고 그랬는데 3건은 승소를 했는지, 나머지는 안 나왔으면 패소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패소 이유, 패소 피해액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이 불어나면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더 나아가서는 국민건강보험재정 누수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평원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예.

○장정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건 보험사기범 적발 강화를 통한 사회정의 확립 및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심평원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도표 보십시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 갈수록 다른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도 심지어 줄어들고 있어요. 대처에 너무 소극적이세요. 그렇지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보험사기 범죄가 과거에는 아주 소액의 보험금을 노린 생계형 범죄가 주로 발생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뉴스에 맨날 나잖아요. 배우자·친족 살인, 방화하는 강력 사건 등 기본적인 사회 윤리와 질서를 파괴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기 업무 절차 중에 다른 수사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허위 입원이 아닌 과다 입원의 경우에는—과다 입원입니다—전적으로 심평원의 심사의견서에 의존한다 또 경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심평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게 손 놓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3건밖에 안 되는 이유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대법원 판례 이후에는 저희가 법원에서 출석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 다 가서 진술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자료 받아 봤다니깐요.

그러니까 그것 분석해서 본 의원실에 자료 주십시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예, 알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래서 심평원에서는, 뭐 때문에 특별법 시행해서 입원적정성 심사를 맡겼겠습니까?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니까 맡겼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손 놓고 계시면 어떡하나 이 말이지요, 제 말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한 내용 충분히 숙지하시고 자료 주시고, 본 의원실에서도 검토하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 마련합시다, 우리. 그래서 심평원의 대책 내용 본 의원실에서 받아 보겠습니다. 저도 공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해 주실 거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예.

다만 제가 한 가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원적정성 평가와 보험사기 부분이, 그러면 이것의 재원을 누가 대야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장정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청을 하십시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그래서 저희가 금융위원회라든가 또는 직접 당사자인 수사기관이라든가 이런 곳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법안도 2개가 지금 국회에 가 있는데……

○장정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그 부분 위원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아니, 거기에 드는 돈보다 지금 국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내는 돈이 한 가구당 31만 5000원이고 1인당 12만 원의 보험료가 추가되고 있다니까요. 그 돈보다 더 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인력 부족하다? 요청하십시오. 예산 없다? 요청하시라니까요, 도와 드릴 테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승택 알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명수 장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김성주 이사장님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작년 7월 달에 도입될 때부터 찬반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그렇습니다.

○김승희 위원 이사장님은 항상 좋은 면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분들도 많아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3월이 주춤 시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들의 동향에 대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김승희 위원 그때 우려한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되면 헤지펀드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역설적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김승희 위원 그런데 지난달 26일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이 고배당 요구한 것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김승희 위원 그랬을 때 국민연금에는…… 아까 존경하는 윤종필 위원님 질의를 하실 때 고배당에 대해서 우리는 요구한 적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무리하게 강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김승희 위원 무리하게 강요하지 않는다…… 무리하게 강요하지 않는다 선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스튜어드십 코드로 경영권, 의결권 행사를 하게 되면 행동주의 펀드들도 같이 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10% 룰도 있는 거고 5% 룰도 있는 거고 다른 의미지만 3%, 5%, 10%의 룰이 다 그 목적과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동민 위원님하고 윤소하 위원님

이 그 10% 룰, 단기차익을 6개월간 토해 내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반대의견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의, 지나친 경영권 간섭에 대한 하나의 견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그러지 않아도, 현재는 649조지요, 그렇지요? 얼마예요? 639조?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예, 약간씩 매일 변동합니다마는 그 정도……

○김승희 위원 637조에서 639조고, 국내 주식시장에 130조 정도를 국민연금이 관여를 하고 있잖아요. 41년도 되면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예전 보고서는 2500조까지, 최근에는 1800조까지 덩치가 커지고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길들이기, 연금사회주의, 연금국가주의,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10%보다 더 높은 주식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경영권 참여를 10% 룰도 없이 적극적으로 했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때 그것에 대한 폐해가 너무 심각하고 그것을 따라서 하는 행동주의 펀드들이 같이 했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업의 수익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경영권 방어에만 급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룰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그것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위원님 지적하시는 우려들을 저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태로부터 주주로서의 권익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일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적으로 활동하는 건데 아무런 지침 없이 하면 임의적으로 할 수 있으니 일정한 지침을 만들어서 공개한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개입 논란 부분에 대해서는……

○김승희 위원 그것을 몰라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 얘기는 수없이 많이 들

었고 그리고 정부 측 입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게 경영권에 참여를 한다면 그러면 기업의 대표이사도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우려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반대를 했던 거고.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런 우려 때문에 일부 기업 측에서 반대를 합니다만……

○김승희 위원 그래서 국민연금은 잘한다고 치더라도 행동주의 펀드들도 마찬가지로 경영권 참여를 할 수 있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어떤 역할을 할 거냐는 거예요, 제 말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제가 향후에 있는 어떤 특정 기업의 주주권,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저도 기금운용위원의 한 명이니까. 저희들은 일정한 지침과 원칙에 따라서 된다고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행동주의 펀드는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행동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로 장기수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기업이 건전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주주로서의 국민연금도 더 많은 이득을 누린다고 하는 것들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데, 지금 행동주의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 걸으려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펀드들의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기업에 고배당을 요구해 갖고 단기 이익을 최대화하고 싶은 속셈이 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저희는 행동주의 펀드와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희 위원 거기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그 물꼬를 터 줬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국민연금도 어떻게 보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적극적으로 개입 안 할 거야, 고배당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룰을 만들든지 우려하는 부분이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국민연금의 역할이 아니더라도 고려는 하시라는 거예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위원님, 저희는 기업을 압박하기 위해서 주주권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대화 전략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로서의 이익을 실현해 간다라고 이해를 해 주세요. 그 원칙을 정한 것이 스투어드십 코드고요. 그것에 어긋난 행동을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결정 구조에 민간 전문가들이 전원 구성되어 있고요. 또 기금운용위원회도 비록 정부의 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개입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정부의 의도대로 어떤 의사를 끌어간 적이 없다고 하는 것 말씀드리고 또 기업 측에서도 대표가 기금운용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활발하게 반대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것들은 없을 것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하여튼 중요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하라는 말씀으로 하고……

○**김승희 위원** 아니요, 그 10% 룰을 제정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명수** 정리하시지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 부분은 금융위원회가 판단을 좀 하고 저희도 다시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승희 위원** 주주가 주주권을 넘어서 경영 참여를 할 경우에 그 경영 참여를 통해서 주주 이익만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우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룰에는 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하게 그걸 푸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저희는 기업의 가치를 제고함을 통해서 주주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지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게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운용원칙이다, 투자원리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하여튼 아쉽지만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요.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기동민 위원** 1분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되게 중요한 논쟁이고 저는 이후에 국민연금이, 어디서는 유니버설 오너(universal owner) 이런 표현을 쓰던데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규모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사회의 기업의 변화 이

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강제해 낼 수도 있는 그런 유력한 수단으로서의 스투어드십 코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엘리엇 이런 행동주의 펀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다르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국민연금이 현대자동차의 흑기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잘못된 주주 이익 가치의 실현만을 극단적으로 취하는 이런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결연하게 싸울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 놓는 논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차제에 10% 룰이든 아니면 무엇이든 간에 실제 스투어드십 코드가 제정된 목적·취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아주 작고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생산적인 토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그런 토론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많이 끌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윤일규 위원**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명수** 추가로 하시겠어요? 가능하면 간략히 해 주십시오.

○**윤일규 위원** 아까 윤소하 위원님에 대한 문제인데요. 식품안전처가 FDA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FDA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예.

○**윤일규 위원** FDA면 아까 홀터 모니터링(Holter Monitoring)이 새로운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을 실제로 의료에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것은 FDA에서 먼저 승인이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임상에 써도 좋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그 제품은 저희가 2등급 제품의 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증은 아직 안 했고 인증을 조건으로 제가 알고로는 규제 특례를 일단 시킨 겁니다.

○**윤일규 위원** 아니, 규제 특례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규제 특례라는 것으로 묶어갈 게 아니라 과학의 발달로 장비가, 옛날에는 그 장비를 전부 다 몸에 차고 갔습니다. 아시지요, 지금 현장에서는? 그런데 그게 과학이 발달해서 그걸 안 해도 시계처럼 딱 차면 되는 편

리한 과학의 테크놀로지 발달이거든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임상적으로 써도 되느냐……

예를 들자면 애들 게임하는 기계를 뇌졸중 환자한테는 재활치료로 쓸 수가 있거든요. 요새 그렇게 막 서로 게임기하고 의료장비가 구분이 없어져 가는 시대로 갑니다.

이것을 의료장비로 써도 좋다는 것은 FDA에서 허락을 받으면 그때부터 수가가 매겨지는 거거든요. 그것은 FDA의 허락이 먼저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말은 그게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에 넣어 가지고 이상하게 기계……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 최성락**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의 안전성·유효성을 철저하게 심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일규 위원** 그렇지. 그게 끝나야 그다음부터는 정말로 현장에서 쓸 수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대체 토론을 포함한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상정한 23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기동민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윤일규 위원님, 신상진 위원님, 유재중 위원님, 손혜원 위원님, 장정숙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김명연 위원님, 각각 서면질의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3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기관장님들께서도 오늘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거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업무에 반영이 되어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집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리에는 없습니다마는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님,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8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기동민	김광수	김명연	김상희
김세연	김순례	김승희	남인순
맹성규	손혜원	신상진	오제세
유재중	윤소하	윤일규	윤종필
이명수	장정숙		

**○청가 위원(4인)**

이개호	전혜숙	정춘숙	최도자
-----	-----	-----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희
전문위원	이지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노홍인		
연금정책국장	류근혁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이의경		
차장	최성락		
기획조정관	이동희		
소비자위해예방국장	김성곤		
직무대리			
식품안전정책국장	한상배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이승용		
식품소비안전국장	권오상		
의약품안전국장	김영욱		
바이오생약국장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원장 직무대리	서경원		
식품위해평가부장	구용의		
직무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		
기획상임이사	이익희		
징수상임이사	전종갑		
급여상임이사	강창희		
장기요양상임이사	임재룡		

기획조정실장	원 인 명
자격부과실장	성 백 길
급여보장실장	정 해 민
요양기획실장	현 재 룡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 성 주
기획이사	박 정 배
기금이사	안 호 준
국민연금연구원장	이 용 하
인사혁신실장	정 준 택
가입지원실장	정 갑 수
운용전략실장	박 성 태
기획협력부장	최 석 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김 승 택
상임감사	문 정 주
기획상임이사	김 선 민
개발상임이사	송 재 동
업무상임이사	강 희 정
심사평가연구소장	허 윤 정
약제관리실장	박 영 미
심사청구운영실장	이 미 선
기획예산부장	문 덕 현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성일종	윤종필	자유한국당	2019. 1. 23.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2019. 2. 8.
.	손혜원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위원	2019. 2. 8.

**○의안 회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2019. 1. 17. 김기선·이장우·강효상·박완수·홍문종·김성원·김태흠·엄용수·곽대훈·원유철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2019. 1. 17. 김기선·이장우·강효상·홍문종·박완수·김성원·김태흠·엄용수·곽대훈·원유철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1. 17. 윤일규·안호영·정춘숙·전혜숙·기동민·박홍근·이규희·이용득·김상희·백혜련·이명수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1. 17. 윤일규·정춘숙·안호영·전혜숙·기동민·박홍근·이규희·이용득·김상희·백혜련·이명수 의원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1. 17. 윤일규·안호영·정춘숙·전혜숙·기동민·박홍근·이규희·이용득·김상희·조승래·이명수 의원 발의)

이상 5건 1월 18일 회부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9. 1. 18. 신상진·홍문표·정태욱·조경태·김상훈·정양석·추경호·이종명·정유섭·윤종필·이완영·이채익·정종섭·윤상직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9. 1. 18. 신상진·홍문표·정태욱·조경태·김상훈·정양석·이종명·정유섭·윤종필·이완영·이채익·정종섭·윤상직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

(2019. 1. 18. 김순례·정유섭·정태욱·임이자·김세연·윤종필·황영철·장정숙·안상수·원유철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21일 회부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9. 1. 21. 이명수·성일종·김재원·박덕흠·김성찬·박성중·김성원·김명연·유민봉·윤종필·송희경 의원 발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9. 1. 21. 김명연·김태흠·송언석·김상훈·박명재·정갑윤·이양수·임이자·김무성·이명수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9. 1. 21. 이명수·성일종·김재원·박덕흠·윤일규·김성찬·박성중·김성원·김명연·유민봉·윤종필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22일 회부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9. 1. 22. 민경욱·김정재·송언석·이만희·홍철호·김선동·정유섭·서청원·홍문중·박덕흠 의원 발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 발의)

(2019. 1. 22. 민경욱·김선동·정유섭·서청원·홍문중·송언석·홍철호·김정재·이만희·박덕흠 의원 발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9. 1. 22. 민경욱·김선동·정유섭·서청원·홍문중·송언석·홍철호·김정재·이만희·박덕흠 의원 발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9. 1. 22. 민경욱·김선동·정유섭·서청원·홍문중·송언석·홍철호·김정재·이만희·박덕흠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 발의)

(2019. 1. 22. 민경욱·김선동·정유섭·서청원·홍문중·송언석·홍철호·김정재·이만희·박덕흠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 발의)

(2019. 1. 22. 민경욱·김선동·정유섭·서청원·홍문중·송언석·홍철호·김정재·이만희·박덕흠 의원 발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 발의)

(2019. 1. 22. 민경욱·김선동·정유섭·서청원·홍문중·송언석·홍철호·김정재·이만희·박덕흠 의원 발의)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 발의)

(2019. 1. 22. 신동근·서영교·서형수·이동섭·김현권·민홍철·신창현·김병기·박찬대·유동수·전현희·우원식·조승래·김중로·김병욱·김종민·심재권·맹성규·권미혁·김영호·윤준호·정세균·송옥주·노웅래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9. 1. 22. 최도자·이동섭·김중희·임재훈·주승용·황주홍·장정숙·유의동·신용현·김관영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 발의)

(2019. 1. 22. 신동근·서영교·서형수·이동섭·김현권·민홍철·신창현·김병기·박찬대·유동수·우원식·조승래·김중로·김병욱·김종민·심재권·맹성규·권미혁·김영호·윤준호·정세균·송옥주·노웅래 의원 발의)  
이상 10건 1월 23일 회부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 발의)

(2019. 1. 23. 오영훈·우원식·윤준호·신창현·송영길·김병기·송갑석·황주홍·이수혁·이개호·정세균·표창원·박정·인재근·박주민 의원 발의)  
1월 24일 회부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9. 1. 24. 김명연·김성원·임이자·김무성·박덕흠·주호영·박인숙·박명재·김광림·이명수 의원 발의)  
1월 25일 회부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

(2019. 1. 25. 조승래·윤일규·김해영·박찬대·이후삼·이용득·박경미·이찬열·최인호·임종성·이상헌 의원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1. 25. 윤일규·권미혁·조승래·김상희·박홍근·정춘숙·안호영·신동근·기동민·남인순·신창현·서삼석·한정애·노웅래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1. 25. 윤일규·권미혁·조승래·김상희·박홍근·정춘숙·안호영·신동근·기동민·남인순·신창현·서삼석·한정애·노웅래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

(2019. 1. 25. 윤소하·심상정·추혜선·박선숙·이정미·천정배·김광수·김종대·송옥주·장정숙 의원 발의)  
이상 4건 1월 28일 회부됨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 발의)

(2019. 1. 28. 신동근·소병훈·김현권·서영교·오영훈·민홍철·윤일규·서형수·이동섭·박찬대 의원 발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2019. 1. 28. 박병석·고용진·김병기·신창현·이수혁·송옥주·김병관·금태섭·윤관석·강창일·한정애·윤후덕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19. 1. 28. 신동근·소병훈·김현권·서영교·오영훈·민홍철·윤일규·서형수·이동섭·박찬대 의원 발의)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19. 1. 28. 신동근·소병훈·김현권·서영교·오영훈·민홍철·윤일규·서형수·이동섭·박찬대 의원 발의)

이상 4건 1월 29일 회부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19. 1. 29. 신동근·소병훈·김현권·서영교·오영훈·민홍철·윤일규·서형수·이동섭·박찬대·이철희 의원 발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19. 1. 29. 신동근·소병훈·김현권·서영교·오영훈·민홍철·윤일규·서형수·이동섭·박찬대·이철희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19. 1. 29. 신동근·소병훈·김현권·서영교·오영훈·민홍철·윤일규·서형수·이동섭·박찬대·이철희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 29. 김승희·김석기·박성중·이명수·김상훈·김규환·윤한홍·박덕흠·이은권·조경태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 29. 김승희·김상훈·최도자·박덕흠·김석기·조경태·박성중·이명수·김규환·윤한홍 의원 발의)

이상 5건 1월 30일 회부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2019. 1. 30. 천정배·장병완·정인화·전혜숙·장정숙·최경환(평)·유성엽·조배숙·김광수·윤영일 의원 발의)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

(2019. 1. 30. 이상현·정인화·최인호·송옥주·이동섭·강길부·정세균·서형수·김병기·윤영일·안민석 의원 발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9. 1. 30. 김상희·윤일규·기동민·고용진·윤소하·정춘숙·한정애·서영교·정인화·인재근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31일 회부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2019. 1. 31. 박인숙·김석기·김명연·김용태·김세연·윤재옥·송희경·유동수·이학재·이종구 의원 발의)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9. 1. 31. 이명수·김명연·홍문표·이완영·김선동·윤일규·박성중·이은권·임이자·박덕흠·김승희·김재원·윤종필·성일종 의원 발의)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9. 1. 31. 이명수·김명연·홍문표·이완영·김선동·윤일규·박성중·이은권·임이자·박덕흠·김승희·김재원·윤종필·성일종·오제세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19. 1. 31. 윤후덕·박정·이찬열·유은혜·남인순·이원욱·안호영·강창일·민홍철·김철민·김경협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9. 1. 31. 신상진·유민봉·김상훈·이종명·김세연·이완영·문진국·추경호·김기선·윤종필·김도읍 의원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19. 1. 31. 신동근·소병훈·김현권·서영교·

오영훈 · 민홍철 · 윤일규 · 서형수 · 이동섭 · 박찬대 · 이철희 의원 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19. 1. 31. 신동근 · 소병훈 · 김현권 · 서영교 · 오영훈 · 민홍철 · 윤일규 · 서형수 · 이동섭 · 박찬대 · 이철희 의원 발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19. 1. 31. 신동근 · 소병훈 · 김현권 · 서영교 · 오영훈 · 민홍철 · 윤일규 · 이동섭 · 박찬대 · 이철희 의원 발의)

이상 8건 2월 1일 회부됨

**호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19. 2. 1. 신동근 · 소병훈 · 김현권 · 서영교 · 오영훈 · 민홍철 · 윤일규 · 이동섭 · 박찬대 · 이철희 의원 발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2019. 2. 1. 신동근 · 소병훈 · 김현권 · 서영교 · 오영훈 · 민홍철 · 윤일규 · 이동섭 · 박찬대 · 이철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7일 회부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2. 7. 황주홍 · 장병완 · 김중로 · 윤준호 · 이찬열 · 안민석 · 이종걸 · 위성곤 · 최도자 · 성일종 · 이동섭 · 추미애 · 금태섭 의원 발의)

2월 8일 회부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9. 2. 8. 신상진 · 김상훈 · 이종명 · 이완영 · 송석준 · 문진국 · 김기선 · 김도읍 · 이학재 · 홍문표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9. 2. 8. 이명수 · 성일종 · 김재원 · 김성찬 · 박성중 · 김성원 · 홍문표 · 이완영 · 김선동 · 이은권 · 박덕흠 · 윤종필 · 오제세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019. 2. 8. 김철민 · 윤영일 · 신창현 · 이석현 · 윤후덕 · 전해숙 · 박정 · 조승래 · 황희 · 김민기 · 이찬열 · 김혜영 · 원혜영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9. 2. 8. 송옥주 · 노응래 · 박정 · 박주민 · 신창현 · 이상현 · 이용득 · 전해철 · 제윤경 · 최재성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11일 회부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9. 2. 11. 전혜숙 · 김병기 · 김영진 · 송옥주 · 윤일규 · 금태섭 · 이찬열 · 김철민 · 안규백 · 장정숙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9. 2. 11. 전혜숙 · 김병기 · 김영진 · 송옥주 · 윤일규 · 금태섭 · 이찬열 · 김철민 · 안규백 · 장정숙 의원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19. 2. 11. 김병기 · 신창현 · 최재성 · 표창원 · 김영진 · 신동근 · 박주민 · 이상현 · 백혜련 · 이원욱 · 김병욱 · 김영호 의원 발의)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9. 2. 11. 이명수 · 김재원 · 박덕흠 · 김승희 · 윤일규 · 김성찬 · 박성중 · 김성원 · 유민봉 · 윤종필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12일 회부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9. 2. 12. 이찬열 · 전해숙 · 김경진 · 황주홍 · 이동섭 · 이상현 · 김정호 · 김삼화 · 김철민 · 장정숙 · 유동수 · 박용진 · 전재수 · 정세균 · 정동영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2019. 2. 12. 박선숙 · 장정숙 · 김삼화 · 채이배 · 박지원 · 인재근 · 신용현 · 최경환(평) · 윤영일 · 유의동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2019. 2. 12. 박선숙 · 장정숙 · 김삼화 · 채이배 · 박지원 · 인재근 · 신용현 · 최경환(평) · 윤영일 · 유의동 의원 발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9. 2. 12. 남인순 · 김병기 · 정춘숙 · 윤일규 · 신창현 · 윤관석 · 박홍근 · 금태섭 · 백혜련 · 김병욱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13일 회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9. 2. 13. 최도자·김순례·신상진·윤소하·김광수·박완수·김성태·정동영·황주홍·윤영일·주광덕·원유철·정운천·신용현·임재훈·김관영·엄용수·김진표·서삼석 의원 발의)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9. 2. 13. 김승희·박맹우·김상훈·이완영·박덕흠·박인숙·박성중·김석기·송석준·최교일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4일 회부됨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9. 2. 14. 김광수·김경진·이찬열·조배숙·정인화·장병완·김종희·황주홍·천정배·유성엽 의원 발의)

2월 15일 회부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019. 2. 15. 정춘숙·윤소하·김병기·임종성·김상희·장정숙·윤일규·김경협·이용득·박정·강훈식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2. 15. 윤일규·안호영·기동민·안민석·강훈식·전혜숙·이규희·정세균·신동근·이학영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2. 15. 윤일규·안호영·기동민·백혜련·안민석·강훈식·전혜숙·이규희·정세균·신동근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18일 회부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9. 2. 18. 서영교·김성수·신창현·강창일·이찬열·정재호·이훈·박정·송옥주·유승희·고용진·위성곤·김종민·송기현·김상희·김영호·노웅래·김병기·이용득·한정애·표창원·이철희·심기준·김한정·백재현·어기구·김두관·임종성·설훈·이개호·안호영·홍의락·박영선·문희상·윤후덕 의원 발의)

2월 19일 회부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

(2019. 2. 19. 이찬열·전혜숙·황주홍·이동섭·이상현·김정호·김삼화·김철민·유동수·박용진·전재수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19. 2. 19. 권칠승·박정·최인호·황희·김해영·박광운·위성곤·전혜숙·정세균·이훈·전해철·오제세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0일 회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2019. 2. 20. 제윤경·김종민·서형수·이수혁·민홍철·신창현·이종걸·김두관·김정호·손혜원 의원 발의)

2월 21일 회부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9. 2. 21. 김성원·경대수·김선동·김순례·김정재·윤상현·윤영석·이은권·임이자·함진규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9. 2. 21. 김성원·경대수·김명연·김선동·김순례·김정재·윤상현·윤영석·이양수·이은권·임이자·함진규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2일 회부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2019. 2. 25. 장정숙·전혜숙·김종희·정인화·김광수·김경진·임재훈·천정배·정춘숙·박찬대·윤소하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9. 2. 25. 김명연·정유섭·박인숙·이양수·김성원·박덕흠·홍철호·정갑윤·박명재·주호영·이종배·김현아·민경욱·이명수 의원 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9. 2. 25. 김명연·박인숙·김광립·정유섭·이양수·김성원·박덕흠·홍철호·정갑윤·박명재·주호영·김승희·김현아·민경욱·이명수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26일 회부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9. 2. 26. 신창현·제윤경·전재수·심재권·정춘숙·표창원·김병기·이종걸·윤후덕·남인순·노웅래 의원 발의)

2월 27일 회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9. 2. 27. 최도자·김삼화·임재훈·김수민·정인화·이동섭·김병욱·황주홍·주승용·김종희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9. 2. 27. 최도자·김삼화·임재훈·김수민·정인화·채이배·이동섭·김병욱·황주홍·조배숙·주승용·김종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8일 회부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9. 2. 28. 이찬열·전혜숙·황주홍·이동섭·전재수·김종희·신용현·임재훈·이용득·유동수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2019. 2. 28. 맹성규·김병기·김병욱·김상희·김철민·남인순·노웅래·박찬대·서삼석·신창현·심기준·심재권·유동수·윤일규·윤후덕·이수혁·이용득·이후삼·전재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4일 회부됨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2019. 3. 4. 송옥주·이상현·유동수·최재성·신창현·이정미·이용득·황주홍·김철민·신경민·한정애·이인영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9. 3. 4. 강창일·강훈식·금태섭·김병관·백혜련·오영훈·유승희·원혜영·윤후덕·표창원 의원 발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3. 4. 윤일규·안호영·김상희·위성곤·김해영·우원식·노웅래·강훈식·김병기·어기구·소병훈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3. 4. 윤일규·위성곤·안호영·김해영·우원식·노웅래·강훈식·김병기·어기구·소병훈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9. 3. 4. 김상희·신창현·윤관석·정춘숙·이규희·기동민·윤소하·윤일규·한정애·안호영·서형수·인재근 의원 발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9. 3. 4. 김상희·신창현·윤관석·정춘숙·이규희·기동민·윤소하·윤일규·한정애·안호영·서형수·인재근 의원 발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9. 3. 4. 김상희·신창현·윤관석·정춘숙·이규희·기동민·윤소하·윤일규·한정애·안호영·서형수·인재근 의원 발의)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9. 3. 4. 김상희·신창현·윤관석·정춘숙·이규희·기동민·윤소하·윤일규·한정애·안호영·서형수·인재근 의원 발의)

이상 8건 3월 5일 회부됨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9. 3. 5. 유승희·강창일·김경협·김성수·박재호·변재일·서영교·송영길·송옥주·원혜영·윤후덕·이상돈·이석현·이종걸·이찬열·한정애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욱 의원 대표발의)

(2019. 3. 5. 정태욱·성일중·김성찬·윤종필·홍문표·이명수·임이자·정갑윤·이종배·박성중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9. 3. 5. 최도자·이동섭·김삼화·오제세·김종희·주승용·유의동·김중로·박주선·서삼석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6일 회부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9. 3. 6. 김승희·이완영·박덕흠·박인숙·박성중·김석기·박완수·김명연·신보라·최교일 의원 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2019. 3. 6. 원혜영 · 김용태 · 주승용 · 전해숙 · 김상훈 · 김관영 · 기동민 · 강석진 · 최도자 · 남인순 · 맹성규 · 김동철 · 신창현 · 김부겸 · 김상희 · 송옥주 · 유승희 · 박선숙 · 오제세 · 김성환 · 고용진 · 김병욱 · 이철희 · 서형수 · 김해영 · 소병훈 · 강창일 · 서영교 · 유성엽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7일 회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

(2019. 3. 7. 김경진 · 조경태 · 장병완 · 황주홍 · 장정숙 · 박주민 · 채이배 · 안민석 · 정동영 · 정인화 의원 발의)

3월 8일 회부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신창현 · 제윤경 · 임종성 · 심재권 · 이종걸 · 서삼석 · 설훈 · 김철민 · 윤준호 · 박찬대 의원 발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윤일규 · 신동근 · 안호영 · 백재현 · 변재일 · 김현권 · 이용득 · 소병훈 · 조승래 · 김병관 · 안규백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윤일규 · 신동근 · 안호영 · 백재현 · 변재일 · 김현권 · 이용득 · 소병훈 · 조승래 · 김병관 · 안규백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윤일규 · 신동근 · 안호영 · 백재현 · 변재일 · 김현권 · 이용득 · 소병훈 · 조승래 · 김병관 · 안규백 의원 발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윤일규 · 신동근 · 안호영 · 백재현 · 변재일 · 김현권 · 이용득 · 소병훈 · 조승래 · 김병관 · 안규백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윤일규 · 신동근 · 안호영 · 백재현 · 변재일 · 김현권 · 이용득 · 소병훈 · 조승래 · 김병관 · 안규백 의원 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윤일규 · 신동근 · 안호영 · 백재현 · 변재일 · 김현권 · 이용득 · 소병훈 · 조승래 · 김병관 · 안규백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윤일규 · 신동근 · 안호영 · 백재현 · 변재일 · 김현권 · 이용득 · 소병훈 · 조승래 · 김병관 · 안규백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김순례 · 신보라 · 김선동 · 원유철 · 서청원 · 이종명 · 정유섭 · 윤영석 · 홍문종 · 이명수 의원 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김순례 · 신보라 · 김선동 · 원유철 · 서청원 · 이종명 · 정유섭 · 윤영석 · 홍문종 · 이명수 의원 발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김도읍 · 정태욱 · 유기준 · 이완영 · 김석기 · 김태흠 · 강효상 · 김규환 · 민경욱 · 김세연 의원 발의)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윤일규 · 신동근 · 안호영 · 백재현 · 변재일 · 김현권 · 이용득 · 소병훈 · 조승래 · 김병관 · 안규백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윤일규 · 신동근 · 안호영 · 백재현 · 변재일 · 김현권 · 이용득 · 소병훈 · 조승래 · 김병관 · 안규백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윤일규 · 신동근 · 안호영 · 백재현 · 변재일 · 김현권 · 이용득 · 소병훈 · 조승래 · 김병관 · 안규백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전혜숙 · 김병기 · 김영진 · 송옥주 · 윤일규 · 금태섭 · 이찬열 · 김철민 · 권철승 · 장정숙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윤일규 · 신동근 · 안호영 · 백재현 · 변재일 · 김현권 · 이용득 · 소병훈 · 조승래 · 김병관 · 안규백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2019. 3. 8. 윤일규 · 신동근 · 안호영 · 백재현 · 변재일 · 김현권 · 이용득 · 소병훈 · 조승래 · 김병관 · 안규백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 발의)

(2019. 3. 8. 전혜숙 · 김병기 · 김영진 · 송옥주 · 윤일규 · 금태섭 · 이찬열 · 김철민 · 권칠승 · 장정숙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전혜숙 · 김병기 · 김영진 · 송옥주 · 윤일규 · 금태섭 · 이찬열 · 김철민 · 권칠승 · 장정숙 의원 발의)

이상 19건 3월 11일 회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명연 · 박덕흠 · 김성원 · 이명수 · 홍철호 · 정갑윤 · 박명재 · 주호영 · 민경욱 · 윤종필 의원 발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 발의)

(2019. 3. 11. 김명연 · 박덕흠 · 김성원 · 이명수 · 홍철호 · 정갑윤 · 박명재 · 주호영 · 민경욱 · 윤종필 · 김현아 의원 발의)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 발의)

(2019. 3. 11. 김광수 · 천정배 · 황주홍 · 최경환(평) · 조배숙 · 송영길 · 정인화 · 유성엽 · 장병완 · 정동영 의원 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광수 · 이찬열 · 유성엽 · 장정숙 · 김경진 · 황주홍 · 정인화 · 정동영 · 박주현 · 천정배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3. 11. 정부 제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김광수 · 김종회 · 이찬열 · 천정배 · 황주홍 · 조배숙 · 정인화 · 유성엽 · 정동영 · 장정숙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기동민 · 정춘숙 · 백혜련 · 김상희 · 김부겸 · 김병기 · 박정 · 고용진 · 김병욱 · 표창원 · 윤후덕 의원 발의)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전혜숙 · 김병기 · 김영진 · 송옥주 · 윤일규 · 이찬열 · 권칠승 · 장정숙 · 안규백 · 김관영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 발의)

(2019. 3. 11. 기동민 · 박정 · 전현희 · 최인호 · 이후삼 · 송갑석 · 민홍철 · 이재정 · 윤일규 · 김병기 · 김경협 · 조승래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9. 3. 11. 전혜숙 · 김병기 · 김영진 · 송옥주 · 윤일규 · 금태섭 · 이찬열 · 장정숙 · 안규백 · 김관영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 발의)

(2019. 3. 11. 전혜숙 · 김병기 · 김영진 · 송옥주 · 윤일규 · 금태섭 · 이찬열 · 권칠승 · 장정숙 · 안규백 · 김관영 의원 발의)

이상 11건 3월 12일 회부됨

**○청원 회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교육비 지원 및 유급휴가 지정에 관한 청원**

(2019. 2. 25.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홍옥녀 외 76,069인으로부터 윤소하 의원의 소개로 제출)  
2월 28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9. 1. 18. 신상진 · 홍문표 · 정태욱 · 김상훈 · 정양석 · 추경호 · 이종명 · 정유섭 · 윤종필 · 이완영 · 이채익 · 정종섭 · 윤상직 · 민경욱 의원 발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 발의)

(2019. 1. 18. 신상진 · 정태욱 · 김상훈 · 정양석 · 송희경 · 이종명 · 정유섭 · 윤종필 · 이채익 · 정종섭 · 윤상직 · 민경욱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9. 1. 24. 이찬열·황주홍·안민석·김수민·전혜숙·이용득·조승래·전재수·김철민·설훈 의원 발의)

1월 2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

(2019. 1. 25. 유민봉·백승주·정유섭·이채익·이학재·민경욱·송희경·박인숙·황영철·이명수 의원 발의)

1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도로와 그 주변지역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2019. 1. 28. 박경미·조승래·김영호·김민기·김병욱·이원욱·표창원·김종민·권칠승·안민석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9. 1. 28. 전재수·신동근·김경협·이원욱·박찬대·설훈·신창현·김병욱·김해영·최인호·이찬열·김병기·박재호·윤준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9. 1. 30. 김광수·박지원·장병완·황주홍·김종희·천정배·유성엽·정동영·장정숙·조배숙 의원 발의)

1월 3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

(2019. 2. 1. 민경욱·성일중·김선동·경대수·김정재·김명연·박덕흠·이은권·유민봉·정유섭 의원 발의)

2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2019. 2. 8. 서형수·서영교·김현권·신동근·민홍철·권칠승·이철희·이용득·송옥주·이종걸 의원 발의)

2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2019. 2. 20. 장정숙·천정배·조배숙·김종희·장병완·정인화·김광수·유성엽·주승용·황주홍·정춘숙 의원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

(2019. 2. 20. 장정숙·천정배·조배숙·김종희·장병완·정인화·김광수·유성엽·주승용·황주홍·정춘숙 의원 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2019. 2. 20. 김해영·이수혁·이장우·이상현·정세균·최도자·이용주·성일중·김용태·김상희·김광수·김병관·금태섭·오제세·박지원·강창일·신상진·변재일·오영훈·송기현·이원욱·이후삼·이재정·김영주·고용진·송옥주·주승용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생태·복지도시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9. 2. 25. 이종걸·김종민·이철희·황주홍·유승희·이상민·박홍근·이재정·서영교·전재수 의원 발의)

2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19. 2. 26. 유의동·김관영·주승용·유승민·이동섭·김삼화·김종석·이태규·하태경·박인숙·채이배 의원 발의)

2월 2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9. 2. 27. 남인순·최재성·백혜련·이규희·박홍근·송갑석·황희·신경민·소병훈·윤후덕·김해영·서영교 의원 발의)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9. 2. 27. 김동철·이동섭·김종훈·한정애·

임재훈 · 김삼화 · 원혜영 · 이종걸 · 박주선 ·  
이찬열 · 최도자 · 정양석 · 장병완 의원 발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9. 2. 27. 김동철 · 이동섭 · 김종훈 · 한정애 ·  
임재훈 · 김삼화 · 원혜영 · 이종걸 · 박주선 ·  
이찬열 · 최도자 · 정양석 · 장병완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  
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

(2019. 3. 5. 심기준 · 송옥주 · 김경진 · 전재수 ·  
신창현 · 박찬대 · 김병욱 · 김정우 · 최재성 ·  
유동수 · 이원욱 · 박정 · 송기현 · 신경민 의원  
발의)

3월 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9. 3. 6. 강병원 · 한정애 · 박홍근 · 김정우 ·  
유승희 · 김태년 · 윤후덕 · 김경협 · 박용진 ·  
김두관 의원 발의)

3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의견서 제출

**2018년 노인의료복지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및 의견표명 결정문**

(2019. 1. 31. 국가인권위원장 제출)

2월 1일 송부됨